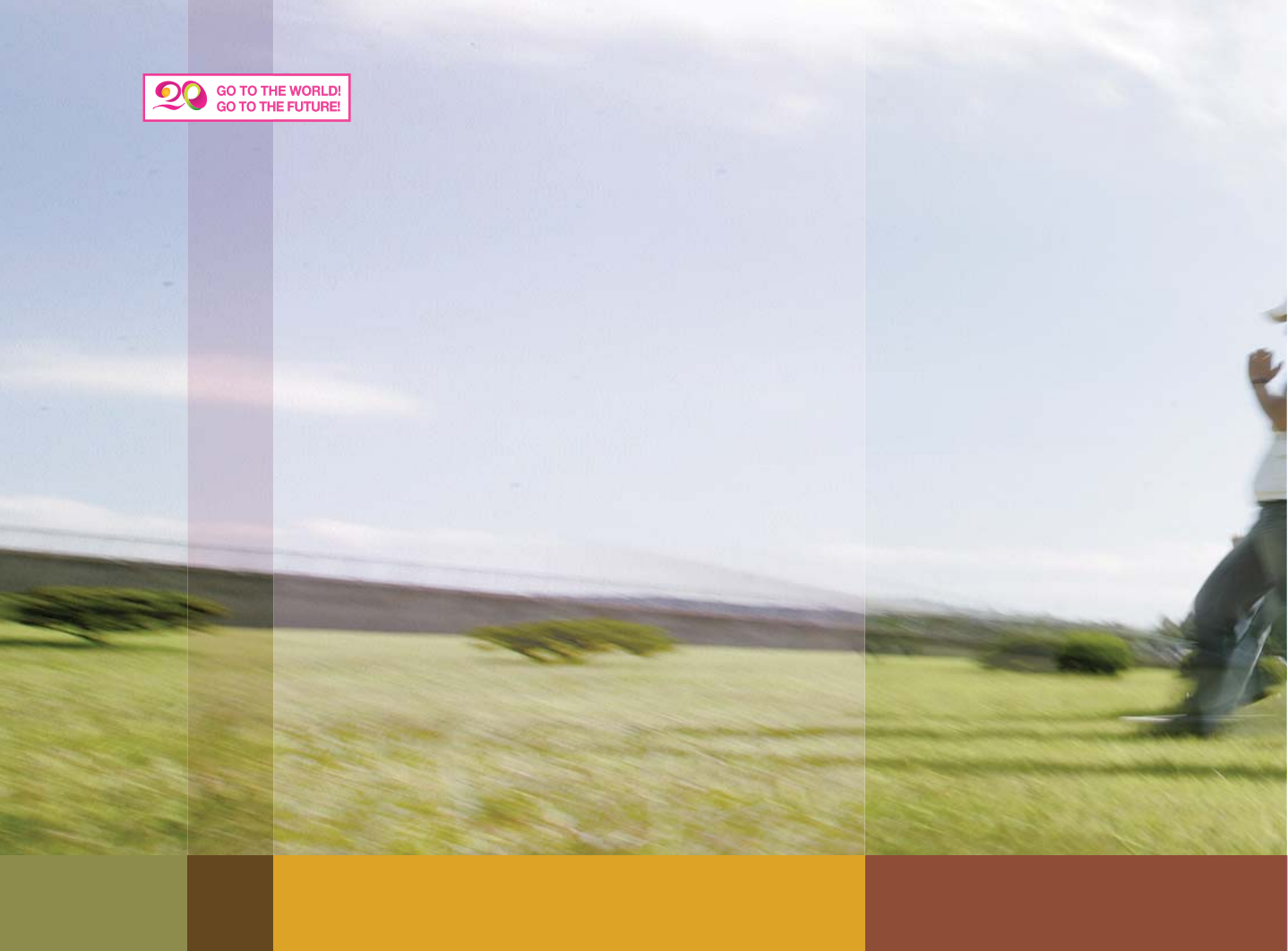


NYPI

특별리포트 2009 개정 교육과정 바로 알기 | 장의적 제형활동
미래세대리포트 청소년참여의 동향과 참여권 신장의 과제 | 천정웅
조사통계리포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의 국제비교 | 김영지 · 김희진
정책제언리포트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 이윤교
해외동향리포트 유니세프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개발을 위한 아동 거지 정책 | 김영지
청소년리포트 청소년의 인권? Right Here! | 차현진
청소년리포트 온 세상에 스마일-아시아공동체학교 | 이유진
청소년리포트 이 시대에 있어 보장되고 지켜주어야 할 권리 | 김희양
합 령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과 청소년의 행복시간 | 김현주

YOUTH

REPORT



NYPI YOUTH REPORT

vol.5 2009. 11

발행일 | 2009.11.10

발행인 | 이명숙

편집인 | 이창호

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전 화 | 2188-8860 팩스 | 2188-8869

디자인 | 김성희 www.kimsunghee.com

인 쇄 | 엘에스컴

홈페이지 | www.nypi.re.kr



GO TO THE WORLD! GO TO THE FUTURE!

- 04 | ✨ **특별 리포트** 2009 개정 교육과정 바로 알기! 창의적 체험활동
- 10 | 🌐 **미래세대 리포트** 청소년참여의 동향과 참여권 신장의 과제_ **천정웅**(대구가톨릭대학교)
- 18 | 📈 **조사통계 리포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의 국제비교_ **김영지**
- 30 | 📖 **정책제언 리포트**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_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 36 | ✈️ **해외동향 리포트** 유니세프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개발을 위한 아홉 가지 원칙_ **김영지**
- 42 | 📰 **청소년 리포터** 42 청소년의 인권? Right Here! _ **차현정**(대구 함지고)
48 온 세상에 스마일-아이아공동체학교_ **이유진**(민족사관고등학교)
52 이 시대에 있어 보장되어야할, 지켜주어야 할 권리_ **김희망**(영광 해룡고등학교)
- 57 | 🍀 **칼럼**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과 청소년의 행복시간_ **김형주**
- 58 | 📰 **NYPI NEWS**

교육과정 심의회 참고자료

· 일시 : 2009. 9. 30(수) 10: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미래를 위한 교육,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2009 개정 교육과정 바로 알기 -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부분 발췌 -

교육과학기술부



본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정책의 공교육연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간한 최근 자료를 발췌하여 청소년 학계 및 시설단체 지도자를 위한 홍보자료로 계구성한 것임. NYPI는 2009년도 「미래인재개발계획」 포럼 및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특별위원회」 참여 등을 통하여 “청소년육성과 공교육 정상화” 정책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문의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외협력·자격검정팀

T. 02-2188-8841

E-mail. ohs@nypi.re.kr

— 개정 방향 /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통한 폭넓은 인성교육 추구



—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통한 폭넓은 인성교육 추구 /

1.1. 현황

- 1.1.1. 재량활동은 2개 영역, 특별활동은 5개 영역으로 세분화
- 1.1.2. 초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의 경우, 국가 또는 지역 교육청에서 이수해야 할 내용을 정하여 하달하고, 이런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함
- 1.1.3.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형식적 운영 및 교원 수업 시수 조정용으로 운영

1.2. 개선 방안

- 1.2.1. 현행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
 - 개성신장, 여가선용, 창의성 개발, 공동체의식 함양 등 전인교육 실현
 - 중학교 교과 재량활동의 선택과목(한문, 정보, 환경, 생활외국어 등)은 교과 영역으로 편성, 고등학교 교과 재량활동은 폐지
- 1.2.2.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확대
 - 초·중학교에서 주당 평균 3시간 이상, 고등학교 주당 평균 4시간 이상 운영 (고등학교 2·4시간)
- 1.2.3.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운영은 학교에 일임, 전인적 성장추구
 -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부 영역: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
 - 국가, 교육청, 지자체는 내실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지원
- 1.2.4.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 기록은 상급학교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 가능

2009년 미래형 교육과정 적용일정

1. 개정 시안 연구·개발
 -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최종 시안 마련
2. 고시 및 적용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연내 고시, 2011년부터 연차적 적용

연차별 적용 일정

학교급	적용연도	'11	'12	'13
초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중		1학년	2학년	3학년
고		1학년	2학년	3학년

학교급별 교육과정(편제 및 시간배당) 시안1)

I. 초등학교

가. 편제

- 1)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2)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으로 한다.

나. 시간 배당 기준

구분	초등학교 1~2	초등학교 3~4	초등학교 5~6	
교과(군)	국어	476	408	408
	사회/도덕	통합교과A 204	272	272
	수학	272	272	272
	과학/실과	136	204	340
	체육	136	204	204
	예술(음악/미술)	통합교과B 272	272	272
	외국어(영어)		136	204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204	204	204
동아리 활동		시간	시간	시간
기타 활동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1,700	1,972	2,176	

1) 이하 제시된 편성·운영 지침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의 변화에 따른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임.

II. 중학교

가. 편제

- 1)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2)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으로 한다.

나. 시간 배당 기준

구분	중학교(시간) 7(중1) ~ 9(중3)	
교과(군)	국어	442
	사회/도덕	510
	수학	374
	과학/실과 · 가정	646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외국어(영어)	340
	선택	204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306
	동아리 활동	시간
	기타 활동	
총 수업시간 수	3,366	

III. 고등학교 교육과정

가. 편제

- 1)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한다.
- 2) 「창의적 체험활동」은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으로 한다.
- 3)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6단위이며, 필수이수단위 115단위, 학교자율과정 67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에 24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 다만,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군)별 최소 이수 단위인 75단위를 편성하되, 전문 과목을 80단위 이상 편성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24단위로 편성한다.

나. 단위 배당 기준

구분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과(군)	기초	국어	15(10)	45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5(10)		
		영어	15(10)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5(10)	35	
		과학	15(10)		
	체육·예술	체육	10(5)	20	
		예술(음악/미술)	10(5)		
	생활·교양	기술·가정 / 교양	15	15	
		제2외국어 / 한문			
	소계			115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24 단위 (408 시간)	
	기타 활동				
총 이수 단위			206		

- ① 1단위는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7회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필수이수단위의 () 안의 숫자는 교과(군)별 ‘최소 이수 단위’ 를 의미하며, 이는 예체능 계열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인정받은 학교가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 ③ 교과 영역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 영역의 ‘최소 이수 단위’ 를 의미한다.
- ④ 총 이수 단위 수는 교과(군) 이수 단위 수와 창의적 체험 활동 단위 수를 합한 단위 수이며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단위’ 를 의미한다.

— 국가 및 교육청 지원 사항

I.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

가. 돌봄 활동 운영 방안

- 학교의 돌봄 기능은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활동과 별도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학교의 돌봄 기능은 현재 운영 중인 방과 후 학교 및 보육 기능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돌봄 활동은 희망하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함.

나. 학교의 돌봄 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지원

- 교육청은 돌봄 활동이 필요한 학교에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야 함.

II. 학교 현장의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활동

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대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지도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교원에 대한 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함.
-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을 위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함.

나. 지역사회 교육자원 활용을 위한 안내 제공

-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내실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
- 교육청은 관내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지도(resources ap)」 작성 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 *

청소년 참여의 동향과

참여권 신장의 과제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천정웅

I. 서론

국가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권은 성인들이 일을 하거나 가족을 꾸려나가는 일 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은 중요한 국가 사회적 책무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회적, 정치적 생활에 활발히 참가하는 수많은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으며, 많은 선진국들이 청소년 참여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Cheon, 2009; Clark & Percy-Smith, 2006).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 아동청소년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등과 함께 참여권을 중요한 권리로서 천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수립 이후 최근 10여년 동안 아동의 인권보장과 청소년참여가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주요의제로 강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입시위주, 학업중심의 학교환경, 가정과 사회에서의 이해부족 등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참여권과 관련한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치들에 따른 인권침해 현상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그동안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에서의 아동청소년참여의 동향을 알아보고 향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과제에 대해 고찰한다.

II. 참여의 개념

참여(participation)의 개념은 두가지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활동에 단지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임파어먼트(empowerment)의 한 형태로서 “의사결정에 진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청소년참여논의의 주요 관심은 두 번째 정의에 있게 되지만, 첫 번째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예컨대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일상적 활동에도 참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McNeish & Newman, 2002).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참여를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과 지역공동체, 넓게는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에 참여하는 의미로 정의하기로 한다. 따라서, 단순히 일반적 활동에 참가하거나, 행사에 동원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참여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이러한 것이 실질적 참여인 것으로 잘못 이해될 때 명목주의가 일어

날 수 있으며, 그러한 혼동이 정책과 실제에서 참여의 개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McNeish, 1999).

참여의 개념이 의사결정에의 참여로 정의된 것과 같이, 청소년참여권의 개념도 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에 의사를 표명하고 성인은 이런 청소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다. Cairns(2006)은 효과적인 참여는 아동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통제하며, 이에 따라 모든 아동이(단지 작은 한 집단만이 아니라) 자문협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결과를 성취하며, 성인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한다.

참여권은 성인의 권위와 힘이 절대적인 사회환경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아동의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자각은 참여권이 존중받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참여권은 소속감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아동 청소년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참여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예컨대, Sinclair 와 Franklin(2000)은 참여의 목적을 ① 인권을 지키고 ② 법적 책임감을 완수하며 ③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④ 의사결정을 개선시키기 위해 ⑤ 민주주의를 증대하며 ⑥ 아동보호 증진과 ⑦ 아동 청소년의 기술 향상, 그리고 ⑧ 자기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 인 것 등 8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MacNaughton, Hughes, Smith(2007)는 성인들이 아동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윤리적 이유, 타월성의 이유, 실용성의 이유 등의 3가지 중 하나 이상과 관련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아동을 의사결정에 포함시키는 결정은 아동들이 자문협의를 받을 권리와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윤리적 신념을 표현한다. 둘째, 아동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일은 그들의 욕구와 원하는 바를 충족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타월성의 이유를 갖는다. 셋째, 실용적 이유는 아동은 자신들이 참여한 정책을 더 많이 지지할 것이라 관련된다.

Hart(1997)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기술이나 책임감에

대한 경험없이 성인연령이 되어 갑자기 책임감있고 참여하는 성인으로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청소년참여를 통해서 청소년이 성장·발달하고 더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참여하여 지역사회전체를 활성화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여는 또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한 부여를 가능하게 하고, 정신적·사회적 복리를 격려한다 (Thomas, 2007). Matthews(2003)는 시민성을 위한 교육, 청소년을 사회에 적응시키고, 청소년들의 성인에 대한 신분을 강화하라는 등의 3가지 측면에서 아동·청소년 참여의 목적을 구분한다. 이들은 각각 참여가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이며 도덕적인 요소라는 점; 임파워먼트를 가능하게 하고; 배제하지 않고 포함하는 느낌을 제공한다는 점과 관련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III. 아동·청소년참여의 주요 동향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결코 최근에서야 대두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학교교육이나 지역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없었다. 가족생활을 통해서든 물론, 학교생활, 동료간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다른 사람과의 일상의 활동 등을 통해 항상 참여의 주제와 마주쳐왔다. 주변환경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참여를 형식화 하는 것, 성인의 역할과 제도적 구조, 그러한 참여에 대한 대중의 인정 등은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다.

한국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된 1991년 이후부터 아동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왔으며, 특히 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는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 수립·시행된 최근 10여년간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참여에 큰 변화가 있어 왔

며, 그에 상응하여 아동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존중에도 변화가 있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요구와 정부의 관심 사이에서의 역동성은 최근 한국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와 관련 활동에서 몇 가지 특징적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동시에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으로 그 동향을 고찰하기로 한다.

1. 아동·청소년참여의 국가정책화

한국에서의 아동·청소년참여의 첫번째 동향은 국가 청소년정책과의 관련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독자적 영역으로서의 중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갖는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의 제정된 때 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 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때이기도 하지만,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8-2002)을 수립하면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는 본격적인 정책의제로서 다루어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당시 정부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참여권 신장을 주요 정책이념으로 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내면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확대, 청소년의 시민권 신장 등을 주요정책 목표로 제시하여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은 당시 같이 제정되었던 새로운 청소년현장과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세대의 주체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준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였다. 청소년을 미래사회의 주인공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전환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천정웅, 1999).

이러한 노력은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과 그 이후의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지속되

었는데, 제3차 계획에서는 ‘참여’, ‘소통’, ‘체험’을 이념으로 삼고, “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을 5대 세부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기조와 방향은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발족과 함께 발표된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 과제”에서도 “청소년 참여·인권증진사업을 4대 핵심추진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참여·인권정책을 핵심적인 정책분야로 확고히 하였다.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참여인권팀을 담당조직으로 편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w성하고 청소년의 정책참여확대, 청소년 사회참여의 내실화,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공동체 의식 함양 등과 관련한 분야의 정책과제를 추진해 온 바 있다. 2009년 10월 현재 아동·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기구축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권리과를 두어 아동청소년 인권과 참여신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참여활동의 활성화와 인권증진

한국에서의 아동·청소년참여증진의 두 번째 동향은 각종 참여활동과 인권정책을 통해 나타난다. 1998년 이후, 청소년정책 전담기구와 행정조직의 확립을 통해 참여·인권정책을 추진하게 됨으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프로그램으로서의 각종 참여활동이 1998년 이후 활성화된다. 여기서 참여활동은 학교나 학급의 자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과, 학교 밖에서의 각종 청소년위원회 활동 및 각종 참여적 활동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청소년참여와 관련된 국가 정책사업의 대표적인 것은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각종 청소년위원회 활동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16개 시·도 청소년대표 및 청소년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행정부처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연간과정으로 운영된다. 2004년 시범개최된 이

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청소년정책이나 사업 등 청소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자문과 건의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자율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참여활동기구이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이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나 시설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치기구이다.

이러한 각종 청소년위원회 활동이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상징하는 사업으로 점차 양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면, 청소년동아리 활동이나 참여적 활동프로그램들은 청소년 중심의 자치적이며 자율적인 집단활동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수련시설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축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청소년동아리활동이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청소년동아리 한마당” 형태의 활동프로그램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청소년축제기획단, 청소년문화기획단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팀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국청소년참여대회, 전국청소년주장발표대회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분야의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사업선정을 위한 심사와 평가과정 등이 청소년들이 평가위원 또는 모니터요원으로 참여하는 등 청소년참여를 의무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3. 청소년의 자율참여 확산

앞서 말한 두 가지 동향이 청소년정책 추진과 관련한 청소년참여와 참여권 신장을 위한 주요 활동과 프로그램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참여와 관련한 또 다른 추세는 청소년 스스로 구성·운영하는 청소년인권단체나 동아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청소년인권 또는 주요 정치적 쟁점이나 국가정책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나타나고 있으며 뜻과 신념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연대하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으로 조직화된 청소년참여의 경향

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최근의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있었던 전국적 촛불시위에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2002년의 월드컵과 의정부 여중생 추모집회, 그리고 2005년 내신 등급제 파동 등에서의 청소년의 진출은 이미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청소년의 권리신장 활동을 주요관심으로 하는 많은 단체, 그리고 대한민국고등학교총학생회, 우리스쿨, 낮추자, 청소년웹연대 등의 결사체들은 학생자치와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4. 사이버참여의 활성화

위에서 언급한 청소년자율참여의 동향과 관련한 하나의 특징은 이러한 참여활동과 단체들은 대부분 청소년들 스스로가 조직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사이버커뮤니티를 통한 청소년참여는 청소년들에게는 일상생활의 주요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앞서 언급된 많은 사회참여, 정치참여 사례들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2000년도에 “두발제한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채널텐”, “아이두” 그리고 18세 청소년선거권 운동모임인 “낮추자” 등은 사이버상의 청소년참여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김영지, 2004). 사이버 커뮤니티를 통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함은 물론, 성인들과 수평적 관계맺음과 동등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경험도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청소년들의 참여는 또한 인터넷 잡지 제작, 사이버토론, 동호회모임과 홈페이지참여 등의 몇가지로 지속되고 있다. 첫째, 청소년들의 사이버참여 활동의 가장 주목할 일은 10대 청소년들이 직접 편집장과 기사를 담당한 청소년편집국을 결성하여 직접 기획

하고 가상공간 속에 청소년들의 웹진(webzine: 인터넷 잡지)을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발달된 통신 기술과 컴퓨터 기술로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이를 통한 의견피력과 의견수렴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지금도 아동·청소년들은 수많은 통신 동호회방, 게시판, 대화실, 토론실 등에서 자신의 일상생활 문제에서부터, 교육 개혁, 입시위주 교육문제, 인권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의 사회현상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고 토론을 펼치고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에는 또한 동호회나 동아리 소모임 등 또래중심의 모임활동이 있다. 이러한 모임은 개인의 홈페이지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동향은 청소년이 사이버공간에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정의하는 행동의 대표적인 예로 평가된다.

이상과 같은 한국의 아동·청소년참여와 관련한 일련의 흐름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개별적으로 때로는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요 현실은 아동·청소년참여의 세계적 동향과 흐름을 같이하는 일이며, 청소년참여권 신장을 위한 중요한 사태진전(development)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V. 참여동향의 특성과 참여권 신장의 과제

이상에서 우리는 아동청소년참여의 개념적 특성과 최근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아동 청소년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왔으며, 참여권 또한 많이 신장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98년을 전후하여 국가청소년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아동청소년인권 보장과 참여증진 및 참여권 확산을 위한 노력은 매우 고무적

인 것이다. 그러나 비록 지난 10여년간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에 참여하는 정도가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태진전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음이 사실이다.

더구나, 아동청소년집단의 사회적 위상변화와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정책·제도, 입시위주, 학업중심의 학교환경, 가정과 사회에서의 이해부족 등 아동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된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교내집회금지, 휴대전화 소지 금지, 0교시 수업, 소지품 검사 등 주로 초·중·고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치들에 따른 표현참여의 제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제한, 사생활 침해 등의 인권침해 현상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인식에서 한국에서의 청소년참여 동향에서 알수 있는 몇가지 특성과 함께 향후 참여권 신장을 위한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천정웅, 2009 참조).

첫째, 위로부터 아래로(top-down)접근하고 있는 동향과 관련된 특성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가치에 대해서는 적어도 성인들에 의해서는 인정되고 지지되었으며, 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체로 아래에서 위로(bottom-up)라기 보다는 위에서 아래로(top-down)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아동청소년정책 부서, 특히 청소년정책부서에 의해 아동과 청소년참여가 정부의 업무에서 “주류”가 되도록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으며, 각종 정책계획수립에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왔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급 수준에서 다양한 범주의 활동에 대해 재정지원이 있었다.

둘째, 참여의 수준은 발언권을 중심으로 한 특성을 갖는다. 청소년참여 촉진을 위한 몇가지 이니셔티브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참여 이니셔티브들이 아동의 견해나 발언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은 보통 성인들의 의제에 대응하여 자문협의를 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해서는 발언권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참여과정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참여이론과 실제에 의하면, 참여는 아동 청소년의 발달 과정 전반을 통하여 보다 활발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하나의 숙고하는 과정이며 학습·행동하는 과정으로서 이해한다 (Taylor & Perry-Smith, 2008).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제기한 이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후속 논의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발언권을 갖는 것” 만으로는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청소년참여를 성취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은 분명하다(Clark & Percy-Smith, 2006).

셋째, 최근의 우리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직접적인 시위참여의 사례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 참여의 경향을 나타내 보인다. 사회적 행동, 사회적 운동 그리고 스스로를 조직화하여 자주적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형식화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과는 별개로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조직화할 수 있는 참여형태를 갖고 있다. Percy-Smith (2006)가 주장하고 있듯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많은 이슈들과 결정은 집이나 학교 및 근린지역같은 일상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결정 영역 밖에서 일어난다.” (p. 154). Hart (2008)는 아동들이 자기 지역공동체에서의 자기 조직화를 통해 비형식적 참여에 종사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당면 이슈에 관한 자기류의 개념에 따라 형식적 의제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갖기 때문이다.

네째, 참여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문제이다. Thomas (2007)는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들이 있음을 말한 바 있다. 예를 들면, 가족, 복지시설, 학교, 지역공동체, 아동청소년단체, 아동·청소년을 위한 형식

적 대의기관들 등이 있다.

참여권과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 일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해 주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대안” 학교들의 경우 보다 민주적인 문화가 존재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자문협의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의기구 또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이 점에서 가정과 학교, 근린지역과 지역공동체는 참여 또한 강조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특히, 학교의 경우 대표적인 참여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대부분의 학교관계성은 수직적이며 다소 권위적이고,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발언권은 통제되거나 제약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점에서 이들 영역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참여는 자신의 환경과 삶의 경험이 “취약한” 또는 “불리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Cheon, 2008; McNeish, 1999). 모든 청소년들에게 존재하는 참여에 대한 장애는 특히 불리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배가된다. 힘든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참여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쉽다. 더구나, 장애청소년들은 신체적 접근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자신의 견해를 소통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정적 전제와 상투성은 특정 청소년집단들에게는 훨씬 더 강하게 될 수도 있다.

여섯째, 아동·청소년참여를 위해 매우 적극적인 정부부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동·청소년참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로만 이루어진 단체들은 많지 않다. 자생적인 일부 모임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하나의 단체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에 봉착하는 것이 현실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정책결정가들의 관심을 받는 데에는 더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일반

적인 경우, 이러한 단체들은 재정과 시간의 부족, 관료주의, 성인 의사결정가들의 혼란, 참여에 대한 경험과 긍정적 태도의 부족, 아동에 대한 정보의 부족, 결과에 대한 부족 등이 지적된다 (Cairns, 2006).

일곱째, 참여공간에 대한 문제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참여공간에서 활동한다, 특히, 인터넷같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참여를 위한 새로운 공간과 기호를 창출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이러한 예는 블로그와 개인 홈페이지, 카페활동 등 아래로부터 (bottom-up) 위로 올라가는 이니셔티브를 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참여는 만남, 토론, 정보공유, 청원의 조직화, 이벤트 조직, 및 각종 시위활동 등의 가능성을 제공한다(Butler, 2008). 그러한 가상공간의 본질과 이러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참여의 형태는 그 결과뿐만 아니라, 아직도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참여와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1990년대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는 다시 한번 모멘텀을 얻었다. 아동·청소년참여의 세계적 동향이 촉진되었으며, 점차 그 자체가 하나의 권리로서 다루어지게 되고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등과 함께 참여권이 아동권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요소로서 규정되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의 참여가 비록 국제법의 일부이며 정부의 정책적 의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효과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들이 있다(Adleron, 2008). 예컨대, 성인의 태도 특히 아동의 능력과 역량에 관한 것,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 참여적 활동을 지지하는 연구 증거의 결여, 그리고 시간, 자원 및 재정 등과 같은 실제적

장애들이 지적되고 있다(Kirby & Bryson, 2002; McNeish & Newman, 2002). 특히, 청소년자신들이 하나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아동과 청소년들이 참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Franklin & Sloper,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동청소년참여를 위한 참된 인권 신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타당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며, 실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아동·청소년참여는 청소년자신은 물론 단체와 사회 전반에 많은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 준다. 더욱이 이제 참여는 세계적인 시대적 추세이며 흐름이다. 참여권 보장은 또한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인류의 국제적 약속이다.

참고문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청소년백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영지(2004). “청소년참여의 동향과 실제,” 청소년문화포럼, 제10호
- 천정웅(1999).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특성,” 한국청소년학회 편, 청소년학총론(pp. 441-475), 서울: 양서원
- 천정웅(2009).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 한국아동권리학회 2008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아동·청소년참여권 (pp.13-47)
- Alderson, P. (2008). Young children's rights: Exploring beliefs,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Jessica Kinsley Publishers.
- Butler, U. M. (2008). Children's participation in Brazil - A brief genealog and recent innov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6, 301-312.
- Cairns, L. (2006). Participation with purpose. In E.K.M.

- Tisdall, J. Davis, M. Hill, & A. Prout (Eds.), *Children, young people and social inclusion: Participation for what?* Bristol: Policy Press.
- Cheon, J. (2009). Convergence of a strengths perspective and youth development: Toward youth promotion practice. *Advances in Social Work*, 9(2), 176-190.
- Cheon, J. (2008). Best practices in community-based prevention for youth substance reduction: Toward strengths-based positive development polic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6), 761-779.
- Clark, A. & Percy-Smith, B. (2006). Beyond consultation: Participatory practices in everyday spaces. Editorial introduction to global special issue: Pusing the boundaries: Critical perspectives on child and youth participation.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 16(2), 1-9.
- Franklin, B. & Sloper, P. (2005). Listening and responding? Children's participation in health care within Eng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3, 11-29.
- Hart, R. A. (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London: UNICEF.
- Hart, R. A. (2008). Stepping back from "the ladder": Reflections on a model of participatory work with children. In A. Reid, B. B. Jenson, J. Nikel, & v. Simovska (Eds.), *Participation and learning* (19-31), Springer.
- Kinoshita, I. (2007). Children's participation in Japan: An overview of municipal strategies and citizen movements.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s*, 17(1), 269-286.
- Kirby, P. & Bryson, S. (2002). *Measuring the magic? Evaluating and researching young people's participation in public decision making*. London: CYPI
- Lansdown, G. (2001). *Promoting children's participation in democratic decision-making*. Florence: Innocenti Research Center
- MacNaughton, G., Hughes, P., & Smith, K. (2007). Young children's rights and public policy: Practices and possibilities for citizenship in the early years. *Children & Society*, 21, 458-469.
- Matthews, H. (2003). Children and regeneration: Setting an agenda for community participation and integration. *Children and Society*, 17(1), 264-276.
- McNeish, D. (1999). Promoting participat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Some key questions for health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13(2), 191-203.
- McNeish, D., & Newman, T. (2002). Involv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decision making. In D. McNeish, T. Newman, & H. Roberts (Eds.). *What works for children? Effective services for children and families* (pp. 186-204). Philadelphia, MA: Open University Press.
- Percy-Smith, B. (2006). From consultation to social learning in community participation with young people: Creating "Space" for young people's participation in neighborhood development using dialogue and social learning. *Children Youth and Enviornment*, 16(2), 153-179.
- Sinclair, R. & Franklin, A. (2000). *Young people's participation, Research in practice and making research count*. London: Department of Health.
- Taylor, M. & Percy-Smith, B. (2008). Children's participation: Learning from and for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6, 379-394.
- Thomas, N. (2007). Towards a theory of children's particip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5, 199-218.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의 국제비교¹⁾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김영지

전문 연구원 | 김희진

1. 서론

한국정부의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활성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권 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인권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의 체계적·객관적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김영지 외, 2003; 국가인권위원회, 2005; 이재연 외, 2005; 길은배 외, 2005; 이종원 외, 2007; 김승권, 2008). 이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의 3개년 연구계획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의 체계적 파악 및 진전 상황 평가를 위한 도구로서 청소년인권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청소년 인권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²⁾ 이 연구는 1차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안)에 따라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의 청소년 인권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한 것이다.

2. 조사개요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으로, 조사대상지는 한국 기준으로 중1에서 고3까지 해당하는 청소년들이다. 각국의 조사대상자는 한국 2,276명, 중국 2,437명, 일본 1,909명, 미국 1,850명, 스웨덴 508명 등이다. 5개국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항목을 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따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³⁾

- 1) 이 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년도 고유과제인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Ⅲ - 청소년 인권실태의 국제비교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 2) 2009년도에는 명실상부한 '아동·청소년인권지표'로서 의미를 갖도록 조사대상을 초등학교생까지 확장하고 인권지표 보완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3) 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청소년 인권영역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이다. 청소년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청소년 발달권은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직업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청소년 참여권은 자신의 국가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최창욱, 박영균 외, 2006,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표 1〉 청소년인권지표 영역별 국제비교조사 항목

대분류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조사문항	
I. 생존권	1-2 신체적 생존권	1-2-4 영양	아침식사 결식 빈도와 그 이유(2) 평일 평균 기상 및 취침시간 흡연경험 음주경험	
		1-2-6 건강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빈도*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건강검진 여부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의식(4)	
		1-2-8 안전	범죄피해로부터의 안전 정도(2)	
		1-3 질적 생존권	1-3-1 자살	자살 생각이나 시도 경험*
		2-1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2-1-1 신체적 학대	지난 1년간 체벌 경험(2)*
		2-1-3 경제적 착취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	
		2-2 차별로부터의 보호	2-2-1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차별을 당한 경험(6)*
		2-2-1 성차별 외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경험(4) (학업성적, 가정형편, 외모 등의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는지 여부 포함)	
		2-3 위기·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	2-3-2	비행/일탈행동 피해경험(7) 비행/일탈행동 경험 비행/일탈행동에 대한 의식(15)
		2-3-2 범죄로부터의 보호	인터넷, 이메일에서의 피해경험(2)	
II. 보호권	3-1 인지적 발달	3-1-1	하루 평균 공부시간 (3) 학교공부에 대한 의견 외국 유학(2) 고민 상담(2) 고민거리의 유형별 경험유무 고민거리 유형별 우선순위*	
		3-1-1 인지발달기회	부모님과의 관계(16) 하루 평균 여가시간 자신의 여가시간에 대한 의견 휴일을 보내는 방법(2)	
		3-2 정서적 발달	3-2-1 정서발달환경	자신에 대한 평가(7) 학교에서의 생활태도(2)
		3-2-2 정서적 안정	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3-3 사회적 발달	3-3-1사회성 발달기회	자신의 적성/특기개발 및 진로직업선택에 대한 의견(3)*
		3-4 직업적 발달	3-4-1 진로기회준비	가정 규칙 결정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가정의 중대사 결정시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 결정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진로·진학문제 결정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 결정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생활용품 구입 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가족여행이나 여가활동 결정 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4-1-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가정사예외	4-1-2 학생으로서의의견표현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4-1-4 문화·여가활동 결정권
		4-1-3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 결정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4-1-4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 결정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4-1-4 문화·여가활동 결정권	4-1-4 문화·여가활동 결정권
		4-2 표현의 자유	4-2-2학생으로서의의견표현	4-2-2학생으로서의의견표현
III. 발달권	3-2 정서적 발달	3-2-1 정서발달환경	3-2-1 정서발달환경	
		3-2-2 정서적 안정	3-2-2 정서적 안정	
		3-3 사회적 발달	3-3-1사회성 발달기회	3-3-1사회성 발달기회
		3-4 직업적 발달	3-4-1 진로기회준비	3-4-1 진로기회준비
		4-1자기결정권 (청소년 의견존중)	4-1-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4-1-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4-1-3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 결정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4-1-4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 결정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4-1-4 문화·여가활동 결정권	4-1-4 문화·여가활동 결정권
		4-2 표현의 자유	4-2-2학생으로서의의견표현	4-2-2학생으로서의의견표현
		4-3 집회·결사의 자유	4-3-1학교내에서의집회·결사	4-3-1학교내에서의집회·결사
		4-5 사회참여 및 참정권	4-5-1 사회참여	4-5-1 사회참여
IV. 참여권	4-5 사회참여 및 참정권	4-5-1 사회참여	4-5-1 사회참여	
		4-5-2 참정권	4-5-2 참정권	
		우리사회의 청소년참여권 보장 수준	우리사회의 청소년참여권 보장 수준	

주 : ()안의 수치는 세부문항 수이며, * 표시된 문항은 한국과 스웨덴만 조사된 문항임.

3. 조사결과

1) 생존권 실태

청소년의 생존권 중 신체적 생존권을 비교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한 주의 및 건강관리, 운동하는 정도, 수면시간, 아침식사여부,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인식, 생활환경에 대한 안전 의식 등을 조사하였고, 질적 생존권을 위해서는 한국과 스웨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과 시도경험들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자신의 건강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청소년들이 중국, 미국, 스웨덴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건강에 대한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보다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의 여자청소년보다 건강에 주의를 덜 기울이고 있었고, 또한 한국의 고등학생은 한국의 중학생보다, 그리고 다른 국가의 고등학생보다 건강에 주의를 덜 기울이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함께, 학교를 통해, 혹은 스스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는다는 응답에서 한국청소년들은 37.4%가 응답해, 중국의 67.9%, 일본의 72.3%, 미국의 65.2%, 스웨덴의 55.4%보다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에 대해서 중학생은 11.4%의 비율을 보였지만, 고등학생은 2배 이상인 28%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경쟁이 심한 대학입시와 취업준비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한국의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고등학생보다, 건강진단을 가장 덜 받고 있었다. 또한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여, 한국청소년의 경우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는 항목에 대해 생활수준이 높은 청소년(13.1%)에 비해, 낮은 청소년의 비율은 25.9%로 나타나 약 2배수에 이르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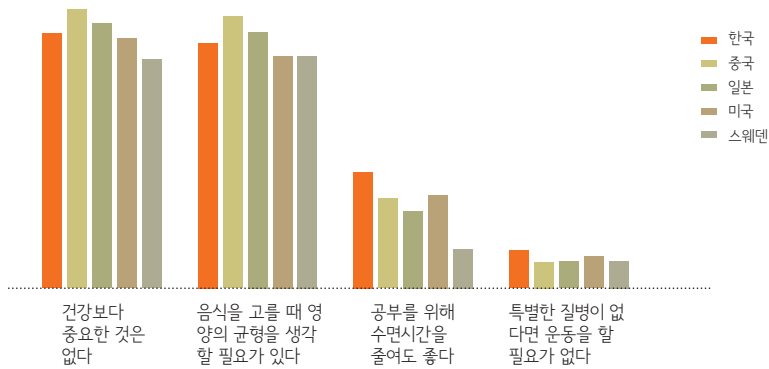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한국청소년은 스웨덴 청소년들보다 운동을 적게 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한국의 여자청소년과 고등학생은 운동을 더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적인 수면시간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은 7시간으로서, 4개국 중 일본청소년(6시간 45분)을 제외하고, 중국 7시간 37분, 미국 7시간 39분, 스웨덴 7시간 44분에 비해 가장 적게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고등학생은 하루에 6시간 30여분의 수면을 취함으로써 중학생의 7시간 30여분보다 한 시간 정도 적게 수면을 취하고 있었고, 이들의 수면시간은 역시 일본의 고등학생(6시간 23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아침식사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청소년의 아침 결식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다른 국가의 고등학생보다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생들에게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5개국 모두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라고 응답했으나, 한국청소년의 경우 '가족 모두 아침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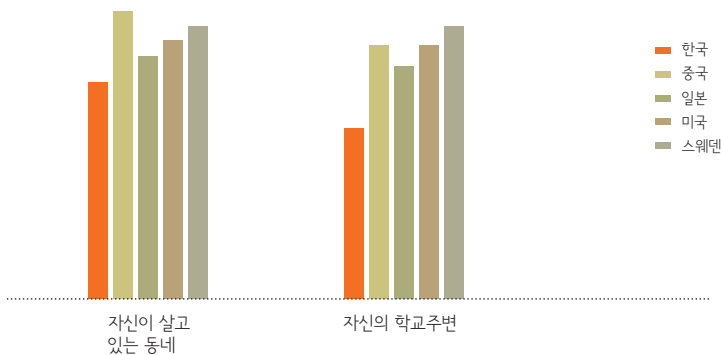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건강, 음식, 수면시간,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한국청소년은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보다 건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음식을 고를 때 영양의 균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는 항목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청소년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반대로 '공부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는 항목에 대해서는 5개국 청소년 중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특히 한국의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보다 음식을 고를 때 영양의 균형을 덜 고려하고 있었고, 공부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또

한국의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고등학생들보다 ‘공부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 라고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청소년들의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은 앞서 조사한 실제 수면시간이 낮게 나타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의 청소년보다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았으며, 여자청소년들이 특히 더 운동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앞서 실제 운동여부에 대한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한국의 청소년, 특히 여자 청소년과 고등학생들이 운동에 매우 소홀히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림 1]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주: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학교주변의 범죄 피해로부터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다른 국가의 청소년보다 거주지역과 학교주변의 환경이 범죄피해로부터 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의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들보다, 그리고 다른 국가의 여자청소년보다 훨씬 덜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거주지역과 학교주변 안전도 주: '매우 안전하다' 와 '대체로 안전하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마지막으로, 질적 생존권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생각과 시도경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한국과 스웨덴 청소년을 비교한 결과, 가끔 혹은 자주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한국청소년이 41.6%, 스웨덴 청소년이 24.4%로서, 한국청소년들이 자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여자청소년이 더 많이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생활수준과 학업성취가 낮을수록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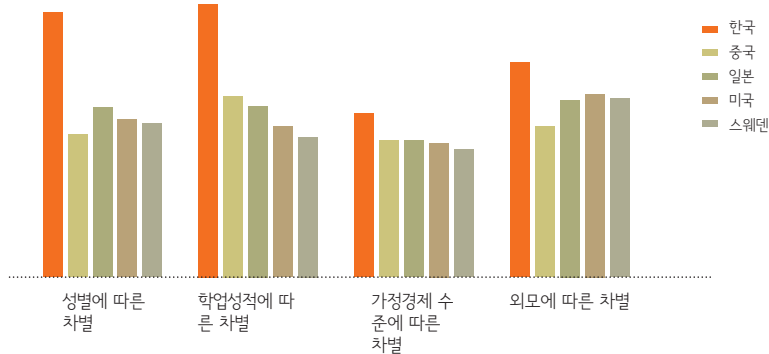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생존권 실태를 국제 비교한 결과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보다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상당히 낮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운동이나, 아침식사 등 등 건강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는 비율도 상당히 낮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부모역시 자녀의 건강진단과 아침식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취업준비 등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들,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학생과 여자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건강과 관련한 잘못된 인식 등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의 노력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체계적인 건강검진 지원시스템 등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조사결과는 지역사회와 학교주변의 안전도와 청소년자살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2) 보호권 실태

청소년의 보호권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생활 속에서 받게 되는 차별, 그리고 범죄와 일탈행동의 피해경험과 이에 대한 인식들을 조사하였다.

먼저 신체적 학대와 관련하여 한국과 스웨덴 청소년들의 부모와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청소년들의 경우 절반 가까이(46.2%)가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1회 이상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교사로부터의 체벌경험도 76.8%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의 체벌경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가정과 학교에서의 체벌경험이 매우 미미한 수치였는데(6.5%, 1.4%),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스웨덴과의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한국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체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급별로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더 체벌을 받고 있었고,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체벌을 경험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조사한 결과, 한국청소년은 23.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데 반해, 스웨덴 청소년은 46.3%로 응답해 스웨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적인 활동에 더 참여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게 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임금과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들이 스웨덴 청소년보다 더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으나,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과 폭언 등의 인격모독, 구타나 폭행 등에 대해서는 스웨덴 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이나 성폭력경험은 두 나라에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해서 한국 남자 청소년의 경험비율이 26.8%로, 여자 청소년(14.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에 대해서도 한국과 스웨덴 모두 남자청소년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그리고 외모나 체격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청소년들은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보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청소년 중에서도 여자청소년과 고등학생이 차별이나 불공평한 대우를 더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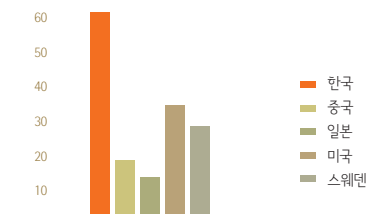


[그림 3]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당한 경험 주: 평균값 기준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행 및 일탈행동 피해 및 인권침해 경험들에 대해 한국의 학교에서는 ‘협박과 폭력으로 인한 금품갈취’, ‘안전사고’의 발생빈도가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학교에서 욕설로 괴롭히는 일이 더 발생한다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학교에서 심한 말다툼과 폭력이 더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협박과 폭력에 의한 금품갈취’, ‘공공기물 파괴’에 대해서도 중학생의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는 대도시(한국)의 청소년들은 다른 지역의 청소년보다 ‘협박이나 폭력으로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 ‘공공기물 파괴’ 등을 학교에서 더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일탈행동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욕하기, 내기하기,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음주, 성인사이트, 성인비디오나 잡지보기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 매우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어 언어를 통해 어떻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5개국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비행 및 일탈행동 중에서 특히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인터넷과 실생활에서의 언어폭력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의 관점에서 이들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일탈행동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행·일탈행동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5개국 청소년들은 ‘인터넷으로 욕하기’와 ‘말로 타인 괴롭히기’가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특히 한국의 남자청소년들은 여자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욕이나 짓궂은 말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다른 국가 청소년에 비해 한국청소년이 가장 높은 비율로 온라인상에서 욕이나 짓궂은 말과 같은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국의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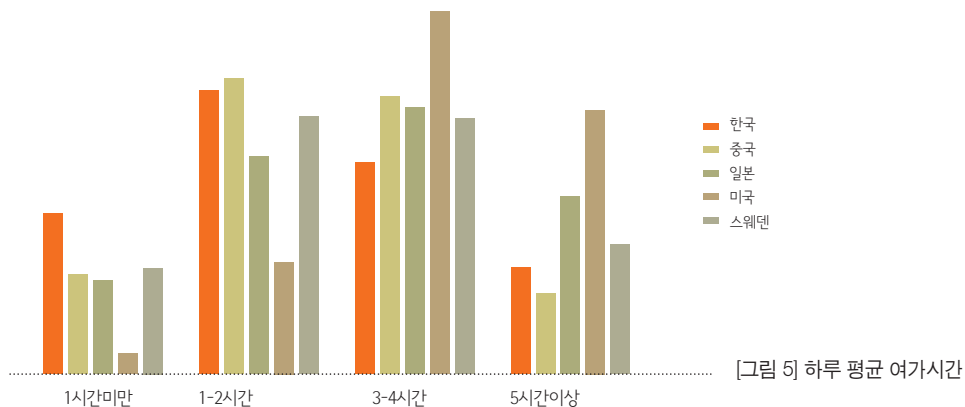
[그림 4] 온라인에서의 언어폭력 경험 주: '자주 있다'와 '가끔 있다'는 응답 기준

종합적으로 한국청소년들의 보호권 실태는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는 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노력이 매우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이 근무조건(특히 근무시간과 임금관련)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성별,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 외모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교육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이 결코 이러한 측면으로 손상 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다양한 종류의 인권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일탈행동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좀 더 가정과 사회가 인지하고 이러한 학교안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교와 외부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는 인터넷에서의 언어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가 아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재인식시켜주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3) 발달권 실태

5개국 청소년들의 발달권을 비교분석한 결과 동서양 청소년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기보다는 개별 국가간 차이가 더 뚜렷하였다.

우선 정서적 발달측면에서 보면 스웨덴, 미국보다는 낮지만 중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한국청소년의 상당수(78.1%)가 자신의 고민을 상담할 사람을 갖고 있었으며 상담 대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어머니, 동성친구, 아버지, 형제자매, 이성친구였다. 이 외에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국과 스웨덴 청소년의 경우 ‘교사’에게 상담하는 비율이 중국, 일본, 미국 청소년보다 높았으며 미국과 스웨덴의 청소년의 경우 ‘이성친구’와 ‘전문상담가’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비율이 동양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조사대상국 중 한국청소년이 가장 많은 고민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학업, 외모, 용돈이었다. 하루 평균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한국청소년이 가장 적었는데 특히 여자청소년과 고등학생, 군지역 거주 청소년의 여가시간이 적었으며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43.5%였다.



다른 국가청소년들이 친구들과 놀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과 달리 한국 남자청소년들(31.6%)은 게임으로, 여자청소년들(30.1%)은 TV시청으로 보냈다. 한국 청소년의 부모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편이나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거나 대화하는 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일본 등 동양권국가들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친구관계(M=2.81), 관심분야(M=2.67), 학교

생활(M=2.59), 귀가 후 활동(M=2.88), 여가시간(M=2.40)보다는 공부(M=3.17)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진로(M=2.97)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서적 안정면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69.1%)이 일본 다음으로 높은 편이었고, 특히 여자청소년(73.1%)과 고등학생(79.9%)의 불안도가 심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응답 청소년의 71.5%가 보통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한국청소년의 43.6%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감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비교대상국이 청소년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다. 한국청소년의 60.4%가 미래보다 현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이는 미국, 스웨덴, 일본의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한국청소년의 47.2%만이 현실을 수용하는 편이라고 응답해 중국청소년 다음으로 현실의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편이었으며 일본청소년들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영향(65%)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웨덴, 미국, 중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행동할 때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지적 발달측면에서 한국청소년은 중국청소년 다음으로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집, 학원 등에서의 평일 공부시간이 3시간 정도이며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이 더 많이 하고 있었다. 한국청소년의 54%가 학교공부를 힘들어 했는데 이는 일본청소년(69.1%)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특히 여자청소년(61.1%), 중소도시(57.1%) 및 군지역(56.6%) 거주 청소년, 가장 낮은 학업성취 수준을 지닌 청소년들(66.7%)이 학교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학교에 가기 싫다고 느낀 경우도 한국청소년의 65.5%가 '그런 적이 있다' 고 응답해 미국청소년(78.4%) 다음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교공부에 대한 부담과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것 간에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0.293^{***}$).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로는 5개국 청소년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어서', '학교수업이 재미없어서',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래서인지 유학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중국과 스웨덴보다는 낮지만 응답 청소년의 과반수(56.8%)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여자청소년, 고등학생의 유학선호비율이 높았다. 또한 부모의 최종학력이 대졸인 집단의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유학을 더 많이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적 발달권 문항은 한국과 스웨덴청소년들만 조사하였다. 먼저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한국청소년들은 학교공부가 적성 및 특기 계발(43.6%)이나 진로 및 직업선택(50.3%)보다는 입시준비(62.9%)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청소년들은 학교공부가 전반적으로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진로 및 직업선택(67.8%)보다는 적성 및 특기 계발(95.2%)이나 입시준비(90.1%)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적 발달권 역시 한국과 스웨덴청소년들만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한국청소년의 41.6%, 스웨덴청소년의 48.8%가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여부에 있어 한국청소년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39.7%), 고등학생(41.9%)집단, 군지역거주 청소년(45.9%)이 동아리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여자청소년(53.7%)과 고등학생(48.9%)이 남자청소년(38.5%)과 중학생(44.9%)보다 더 많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양 국가 간에 동아리활동의 성격이 달라서 동아리활동 유형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의 상당수가 학교 내 동아리활동(67.7%)을 하고 있었으며 사이버 동아리(13.0%)나 학교 밖 동아리활동(19.3%)을 하고 있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스웨덴청소년의 경우 학교밖 동아리활동(65.1%)이 가장 활발했으며 학교내 동아리활동(12.8%) 비율은 매우 낮았다.

조사결과, 청소년의 발달권 신장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고민을 친구와 상담한다는 점을 볼 때 또래 상담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차원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와 역할모델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여가활동 유형도 제한적이므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

력이 필요하다. 넷째, 학업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학교문화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 및 특기에 맞게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이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4) 참여권 실태

참여권 분야 주요 관심영역인 자기결정권(청소년 의견존중),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회참여 및 참정권 관련 청소년의 의식과 실태를 알아보았다.

먼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청소년 의견존중) 현황을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스웨덴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부모의 자녀 의견 존중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 한국의 경우 ‘가정규칙’ 과 ‘가족여행이나 여가활동’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자녀의견 존중도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동양적인 부모-자녀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는 특히 중국의 경우 자녀의 결정권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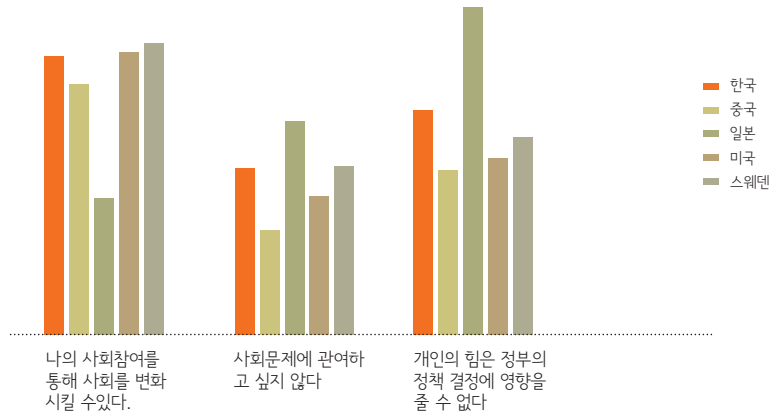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 ‘내 생활용품 구입’ 등 개인의 문화·여가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존중받는 정도가 낮아 한국사회의 통제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으며,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로·진학문제’ 결정 시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응답이 많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성별 차이를 보면,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대부분 항목에서 딸의 의견이 더 존중받고 있었고, 교급별로는 일관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취미·여가’ 관련 결정 시에는 중학생이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실태를 알아본 결과, 중국과 스웨덴이 ‘부여한다’ 는 응답이 높았고, 한국(10.6%)과 일본의 경우 낮게 나타났으나 가장 높은 중국의 응답률도 38.7%에 그쳐 대부분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모든 국가에서 ‘잘 모른다’ 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학생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 교칙이나 교육관련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관심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소명권을 전혀 주지 않는다’ 는 응답은 5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7.9%), ‘잘 모른다’ 는 응답도 5개국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47.0%) 징계절차에서 학생의 소명권을 보장해 주는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권리의식과 인식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에서 ‘학생회 등 자치활동 참여 희망 여부’ 를 알아본 결과, ‘참여하고 싶다’ 는 응답율은 중국이 52.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49.4%, 한국 22.5%, 일본 12.7%, 스웨덴 11.9%의 순으로 나타났다는데, 한국은 2위인 미국의 절반 이하의 응답률로 세 번째 순위에 머물러 자치활동 참여의향이 낮은 편이었다. ‘일본 청소년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57.2%가 ‘잘 모르겠다’ 고 응답하여 학교 자치활동에 대한 무관심이나 판단유보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다. 5개국 중에 4개국의 경우에 여학생의 참여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자청소년의 학교 자치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3개 문항 중 ‘나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는 문항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포함)’ 는 응답률이 스웨덴의 경우 7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69.3%), 한국(68.1%), 중국(61.1%), 일본(33.4%) 순의 응답률을 보여 일본을 제외한 4개 국가 청소년의 과반수가 사회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회참여의 의의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 주: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값 기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청소년의 참여 인식이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의 경우 한국이 5.4%로 가장 낮게 나타나 한국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매우 그렇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적 의식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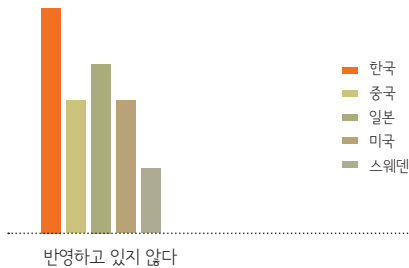
‘사회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항목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살펴보았다. ‘관여하고 싶지 않다(‘매우’와 ‘그렇다’ 포함)’는 응답은 일본의 경우 5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스웨덴(41.0%), 한국(40.1%), 미국(34%), 중국(25.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과반수인 60% 정도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한 셈으로, 충분하지는 않으나 긍정적인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일본 청소년의 과반수가 사회참여에 대해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중국 청소년은 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힘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에 일본 청소년의 경우 79.8%가 ‘그렇다(‘매우’와 ‘그렇다’ 포함)’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 54.5%, 스웨덴 48.7%, 미국 43.4%, 중국 40.7% 순으로 나타나 한국 청소년의 부정적 의견이 두 번째로 많았다. 개인의 참여를 통한 정책개선 가능성에 대해 일본 청소년이 가장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 청소년은 가장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참여해야 한다(‘반드시’와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률이 스웨덴의 경우 9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은 80.2%로 중간 정도 순위를 보였다. 중국의 경우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30.6%로 매우 높게 나타나 참여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적극적인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참여해도 무의미하다’는 응답이 일본(16.3%)과 한국(13.9%)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나 참여에 대한 무력감과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가에서 대체적으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참여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참여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정권 영역에서는 학교교칙에 대한 학생의견 반영 여부와 학교발전예의 학생 의견 반영 여부를 알아보는 2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먼저, 학교 규칙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의 경우 스웨덴이 4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36.0%), 중국(23.8%), 한국(14.9%), 일본(13.8%) 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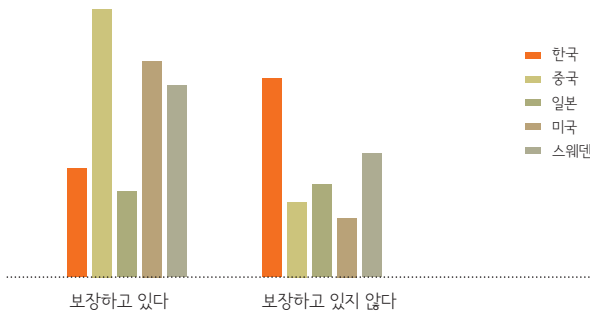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반영하고 있지 않다’ 는 응답이 46.5%로 5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학교 규칙에 학생의견 반영 여부

학교발전을 위해 학생의견을 듣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결과,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는 응답이 한국의 경우 6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스웨덴(65.5%), 일본(60.2%), 중국(57.3%), 미국(51.9%) 순으로 나타나 한국 청소년의 학교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 참여권 보장수준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있다(‘보장하고 있다’ 와 ‘보장하는 편이다’)’ 는 응답이 중국의 경우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53.9%), 스웨덴(47.9%), 한국(27.2%), 일본(2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잘 모르겠다’ 는 응답이 54.7%로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판단유보를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별로 보장하지 않음’ 32.9%와 ‘전혀 보장하지 않음’ 16.4%)’ 는 응답은 한국이 49.3%로 최대치를 보이며 참여권 보장수준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이,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8]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주: ‘보장하고 있다’ 는 ‘보장하고 있다’ 와 ‘보장하는 편이다’ 를 합한 값 /
 ‘보장하고 있지 않다’ 는 ‘별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와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를 합한 값

‘권리수준에 만족하는지’ 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매우만족’ 과 ‘만족’ 포함)’ 는 응답이 스웨덴의 경우 63.2%로 가장 높았고 미국 61.7%, 중국 58.7%, 일본 28.3%, 한국 21.3%의 응답률을 보여, 한국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수준에 대해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불만족스럽다(‘매우’ 와 ‘불만족’ 포함)’ 는 응답도 24.4%로 5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5개국 비교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은 매우 미흡하였으나 참여의식과 욕구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더욱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참여를 통한 사회변화 가능성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에서 5개국 중 중간 정도 수준에서 긍정적인 의식을 보여 주었고, 특히, 학교운영에 학생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5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 참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반면 정책변화를 위한 개인의 참여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드러내었다.

모든 문항에서 국가별 전형성이 일관되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스웨덴과 중국의 참여권 수준과 의식이 높았으며 한국과 일본은 낮게 나타났는데, 한국은 참여 실태와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에 비해 일본은 인식과 의식면에서 참여에 대해 회의적이고 무관심한 경향을 보였다. 참여 실태에 있어서는 동서양 또는 대륙별 차이보다는 인권 선진국인 스웨덴과 사회주의 정치체제 특성을 가진 중국 등 개별 국가단위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정부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지 2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협약에 기초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따라 5개국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아동·청소년인권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실증되었다.

변화된 정책환경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 인권정책 인프라를 확대하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권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등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20주년 기념의 해인 2009년이 그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 이용교

1.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개발의 과정

필자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청으로 기획포럼을 통해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을 개발하였다. 2009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천정웅 교수(대구가톨릭대)와 이중섭 박사(산업관계연구원)와 함께 수행하였다. 연구진은 두 차례 전문가 포럼을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에서 사이버 포럼을 하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정책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개발의 전제, 분석틀, 권리정책의 21개 아젠다와 10대 우선과제 등 크게 네 부문으로 이루어졌다.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개발을 위한 전제에서는 이 정책의 기본적 토대, 목적지향성, 향후 방향성 등에 관한 것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고찰과 한국에서의 이행상황에 대한 분석, 유엔이 한국에 권고한 내용을 파악하면서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알아보았다.

분석틀에서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4가지 영역 틀에서 기존의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영역과 대상들을 탐색하고, 이에 근거한 전달체계들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아동·청소년 권리 정책과제를 제시한 부문은 “기본 정책과제 21개(아젠다 21)”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10대 우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과제 21은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개발의 전제와 분석틀에 기초하여 공적 전달체계, 사적 전달체계, 인권교육과 연구 등 3가지 차원을 논의하였다. 우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이상적·발전적·지향적인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동시에 정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현실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여 10대 우선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2.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개발의 전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협약당사국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해야 할 기준을 정한 협약으로서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대한민국은 1990년에 동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에 비준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아동·청소년 권리정책도 이 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의 권리 유형별로 개발되고 그 보장정도에 따른 체계적인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가지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청소년 복지욕구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든 국가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제적이고 총체적인 통합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글은 2008년 미래청소년학회 춘계학술대회 ‘청소년통계체계 구축방향과 과제’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미 이행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아동권리사업으로 정책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한국의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아동·청소년정책 조정 기능, 독립적인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 관련 예산, 체계적인 통계 등이 미흡하고, 협약에 대한 홍보와 아동·청소년과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미흡한 상황이다.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국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유엔차원에서는 2002년에 유엔아동특별총회를 개최하고 결과문서로 “아동에게 적합한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 WFFC)”을 채택하였다. “아동에게 적합한 세상”은 지난 10년간의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평가하고 앞으로 10년간의 아동권리향상을 위해 국제적인 기준으로 4가지 주요 우선 사안(아동의 건강한 삶의 증진, 질 높은 교육의 제공, 학대 착취 및 폭력으로부터 아동 보호, HIV·AIDS 퇴치)과 21개 성취지표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2002년 이래 어린이 보호·육성계획,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을 통해 “아동에게 적합한 세상” 즉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종래의 “요보호 아동 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아동에 대한 조기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아동분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자들은 가족과 지역사회 지원, 건강한 삶의 보장, 교육과 학습기회, 위험상황으로부터 보호,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제 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황옥경·이호균, 2006).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7~2011년)에서 아동권 향상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국가의 아동 양육과 보호 책임 강화,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 강화, 보육·교육 혜택 확대, 아동의 참여권 보장 등 네 가지를 강조하였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외 정책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동에게 적합한 세상”을 만들고,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권리 이행에 관한 책임 강조(범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 모든 아동·청소년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 보장; 아동·청소년 인권친화적 문화형성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역할 및 협력, 지원체계의 강화);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제사회에 부응하는 아동·청소년권리 수준 보장 등을 강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개발의 틀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정책현장에서 각 권리는 분절되지 않고 서로 연계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은 당사자에 대한 권리교육, 권리상담, 침해구제와 같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관련 기관·단체·시설에 영향을 주어서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과 인식개선사업을 하는 간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포괄한 것이다.

본 연구는 권리정책 개발을 아동권리협약에 바탕을 두면서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를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공적 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민간단체 육성, 기관운영 지원, 권리존중 네트워킹을 포함한 “사적 전달체계”를 장려하며; 권리교육, 지도자 양성, 연구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이루어지는 “권리교육연구”를 개발하여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Agenda 21”을 제시하였다.

4.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과제 - “Agenda 21”

가. 공적 전달체계 - 정책기본계획, 법체계, 서비스 전달체계

과제 1.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아동·청소년권리정책은 복지, 교육, 소년사법,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기에 각 관련 부처간의 조정과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 아동·청소년기본법(안)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아동·청소년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과제 2.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각 분야별로 모니터링하고 아동권리협약과 헌법 수준에 맞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임의기구인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센터'를 법적 기구로 운영한다.

과제 3.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설정한다.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업무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므로 정책수행의 기반이 되는 단기·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과제 4.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권리 관련 부처간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정책 개발, 모니터링, 홍보, 교육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의 주요 정책이 아동권리협약에 부합되도록 정책을 제안한다.

과제 5. 아동·청소년권리 관련 법체계를 정비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아동복지법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등에서 아동·청소년권리 관련 사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안되어 있으므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과제 6. 아동·청소년권리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생활밀착형 홍보방안을 수립한다. 아동·청소년의 권리정책은 정부를 통한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민간과 거버넌스를 통한 문제해결이어야 한다. 정부의 역량은 유효하게 작동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역량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의 역량과 자발성 강화 조치를 취한다.

과제 7. 시·도와 시·군·구에 아동·청소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 아동복지서비스의 분절성을 차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도와 시·군·구에 아동·청소년정책 전담 행정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청소년정책 전담팀을 설치하여 아동권리정책의 개발, 집행, 평가, 모니터링,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지자체 차원의 행동계획의 수립 등을 수행한다.

과제 8. 아동·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반 여건을 정비한다. 인권정책이 보다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인 지역단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하에 아동·청소년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기존 아동·청소년의 참여기구를 혁신하여 사무국 혹은 지원사무국을 두고, 아동·청소년의 의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과제 9. 아동·청소년정책 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의 개정,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과 연계하여, 아동·청소년권리 핵심 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한다. 시·도와 시·군·구에서 아동행정과 청소년행정을 통합하고, 아동복지와 청소년육성의 분절성을 극복해야 한다.

나. 사적 전달체계 - 민간단체 육성, 기관운영 지원, 권리존중 네트워킹

과제 10. 아동·청소년권리사업을 담당하는 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아동청소년기본법(안)에 의해서 법정단체가 될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분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협의체는 허브(Hub)의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단체에서 대상자의 중복성 및 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컨소시엄 및 연계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과제 11.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기관·단체·시설 운영지원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기관·단체·시설

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앙에서는 다양한 변화에 대한 SWOT분석 등을 통해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등 능동적인 대응인식과 실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아동·청소년권리 인종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청소년수련활동에서 인증받은 인권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사례집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과제 12. 아동·청소년 권리옹호를 위한 사회공헌과 전략적으로 연계한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비영리단체에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의 인적자원과 소비주체에게 투자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업의 사회공헌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과 연계하여 인적·물적 자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과제 13. 아동·청소년의 권리의식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지역아동·청소년권리협의회를 만들어서, 학교와 아동·청소년시설은 학생과 장소를 지원하고, 아동·청소년권리 관련 단체는 전문강사를 지원하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프로그램 평가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와 예산을 지원한다.

과제 14. 학생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초·중·고등학교를 만든다.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내에 인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벌금지과 함께 대안적 훈육으로 상벌점제를 도입하고, 대화와 상담 등을 통한 적극적 생활지도 등을 실시한다. 인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과제 15. 가정에서의 아동·청소년 발달환경을 조성한다.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대표적인 현상이 가정이다. 특히 부모의 사망, 이혼, 빈곤 등으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기 쉽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제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므로 부모 이혼시 자녀의 의사표명권을 보장하고, 가정위탁제도와 아동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시킨다.

과제 16. 장애 아동·청소년 인권기준을 마련한다. 장애학생에게 가해지고 있는 심각한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다소 완화되었지만, 이 법은 차별로 인한 구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장애학생 차별예방을 위해 장애아동 인권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제 17. 특별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 이주노동자의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 특별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수준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대책을 세워서 그들의 권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켜야 한다.

다. 권리교육연구 - 권리교육, 지도자 양성, 연구지원, 프로그램 개발

과제 18. 아동·청소년권리교육을 대상별로 체계화 한다. 권리교육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인권관점으로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갖도록 돕기 위해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활동이 강조되는 교육이다. 인권교육은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주된 영역을 중심으로 해당 영역의 주요 인권실태와 인권보장을 위한 적절한 절차와 과정 등이 세분화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과 관련 전문가에 대한 권리교육도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과제 19. 아동·청소년 권리옹호를 위한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강사 파견제도를 도입한다. 성인 지도자와 또래지도자를 위한 교육과 학습형태는 온·오프라인을 통합하여, 온라인 상으로 이론적 교육을 실시하고, 오프라인 상에서는 지도자들이 소집 단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형태를 구성하도록 한다.

과제 20. 아동·청소년권리의식 강화와 인프라 구축 모형에 관한 기초 연구과제를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권리의식 강화와 인프라 구축 모형에 대한 기초 연구,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의 권리영역에 관한 연구, 권리영역의 실태에 관한 연구, 다른 나라와의 비교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제 21.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아동·청소년 권리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오프·온라인 활동을 잘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것을 널리 보급한다. 핵심 프로그램의 내용을 실시간에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5.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10대 우선 과제

필자와 연구진은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으로 아젠다 21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제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최우선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10대 우선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기획포럼을 통한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개발’ 보고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이용교·천정웅·이중섭, 2009).

과제 1.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발전에 장기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아동·청소년 권리 정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과제 2.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TF·전문가 협의체제 구축: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종합·조정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심 ‘메카’로서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TF·전문가 협의체제를 구축한다.

과제 3. 아동·청소년 권리 국제교류 사업 추진: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국제적 차원의 학술대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 국제적 위상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적 사업을 추진한다.

과제 4. 인터넷 기반의 맞춤형 아동·청소년 권리교육 확산: 모든 이용자들에게 개방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맞춤형 아동·청소년 권리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과제 5. 생활밀착형 아동·청소년 권리 대국민 홍보 캠페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아동·청소년권리에 대한 이해나 상식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생활 속에서의 아동·청소년권리 의식 수준을 강화시킨다.

과제 6. 아동·청소년 권리 연구·개발 지원체제의 구축: 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한 기초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토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및 정책, 현장에서 활용될 과제의 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 개발 지원 체제를 운영한다.

과제 7.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아동권리협약은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한국정부에게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였으므로 장애 아동·청소년의 취학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들에게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한다.

과제 8. 대안가정이 요구되는 아동·청소년에게 인권친화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원가족과 함께 살 권리를 강조하고,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급적 대안가정이나 가정형 보호양식에서 양육되도록 장려하고 있기에 오보호아동에게 인권친화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과제 9.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연수과정에 ‘청소년인권과 참여’의 강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되지만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연수과정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으므로 ‘청소년인권과 참여’를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연수과정에서 강조한다.

과제 10. 아동권리모니터링과 아동권리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모니터링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강조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아동권리모니터링과 아동권리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므로 이를 수행할 민간 중추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2008). 아동·청소년 희망보고서- 제1차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09-2011).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참여·인권분야) : 미래예측을 위한 청소년 참여·인권 환경 및 정책 분석.
- 경기도차세대위원회(2002). 청소년 정책 인지도 및 의식조사 보고서. 수원: 경기도 차세대 위원회
- 김승권(2007). 한국아동권리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보건복지포럼 128호
- 김윤나(2009). 사회투자정책 관점에서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분석: 아동·청소년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논문집
- 문성호·유서구·정경은·김윤나(2008). 사회투자정책과 청소년정책 방향.
- 박항아(200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유형화와 아동을 위한 내용의 재구성. 교육이론과 실천, 12 (2).
-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계획수립.
-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미래 세대 희망 플랜: 아동·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9-2013).
- 양용희·이지숙·김정희·강주현·정양운(2007). 선진국의 사회공헌활동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오정수(2005). 아동복지제도모형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6권.
- 오해섭 외(2008). 청소년의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봉철(1991). 인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한국청소년연구 2(4): 5-29
- 이윤교(2006). 한국의 아동·청소년 권리. 인간과복지.
- 이윤교·이중섭(2009). 아동·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개발 기획포럼
- 이윤교 외(2006). 한국의 아동청소년 권리. 인간과복지.
- 이윤교·천정웅·안경순(2006). 청소년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윤교·천정웅·이중섭(2009). 기획포럼을 통한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개발. 보건복지가족부.
- 이혜원(2001).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아동복지법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44.
- 조금주(2007). 중고등학교생 인권에 대한 교육주체별 의식 차이 분석. 청소년학연구, 14(6): 43-67.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08). 가정위탁보호현황.
- 천정웅(2009). 아동청소년권리지수: 발달권,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샵 발표원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천정웅(2008).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 한국아동권리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천정웅(1999). 청소년인권: UN·국제기구의 발전노력과 주요국 동향. 청소년인권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한국청소년학회.
- 천정웅·김영지·김경호(1999). 청소년이 알아야 할 인권이야기.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개발원(2005).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 최윤진, 이영란(2005). '외국의 청소년 사회 참여 정책'. (사)청소년 교육전략 21, 한국형 청소년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장애인 실태조사.
- 한봉희(1992). 아동의 권리조약과 가족법. 가족법연구, 6.
- 허남순·이혜원(2006).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국내 가정위탁보호의 현황 분석. 한국아동복지학회.
- 황옥경·이호균(2006). 국가행동계획 연구
- Alderson, P. (2008). Young children's rights: Exploring beliefs,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Jessica Kinsley Publishers.
- Arnott, M. A. (2008). Public policy, governance and participation in the UK: A space for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6: 355-367.
- Cairns, L. (2001). Investing in children: Learning how to promote the rights of all children, Children and Society, 15: 347-360.
- Flowers, N. (Ed.) 1998. Human rights here and now: Celebrat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Minneapolis, MN: Amnesty International USA and University of Minnesota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 Franklin, B. (1995). The case for children's rights: A progress report. In B. Franklin (Ed.) The handbook of children's right: Comparative policy and practice (pp. 3-22). London: Routledge.
- Hodgkin, R. & Newell, P. (2002).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v. ed.), New York, NY: UNICEF.
- MacNaughton, G., Hughes, P., & Smith, K. (2007). Young children's rights and public policy: Practices and possibilities for citizenship in the early years. Children & Society, 21: 458-469.
- OHCHR. (2007). Teaching Human Rights: practical activitie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United Nation New York and Geneva.
- State of Michigan(2004). Office of Children's Ombudsman 2002-2003.
- State of Michigan(2004). Office of Children's Ombudsman 2002-2003.
- Taylor, N. J., Smith A.B., & Naim, K. (2001). Rights important to young people: Secondary student and staff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9, 137-156.
- UNICEF. (2006). Child friendly school: Manual table of contents introduction references.



unicef 유니세프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개발을 위한 아홉 가지 원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영지

1. 아동·청소년친화도시란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Child and Youth Friendly Cities Initiative, 이하 CFC)'은 지역사회의 질과 환경, 사회적자본이 아동·청소년에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역수준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한다. CFC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이행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의 완전한 권리 실행을 통해 체계적인 방식으로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다루는 강력한 도구이다.

CFC 실행을 결정한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1996)는 아동·청소년의 복지가 건강한 지역, 민주주의의 사회,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궁극적인 척도임을 선언하였다. CFC는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지역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법, 프로그램과 예산 등에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다. CFC에서 아동·청소년은 적극적인 주체로 자리매김되며 문제라기보다는 해결책의 한 부분으로 인식된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성인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기본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 아동·청소년, 민간단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일하는 협력 이니셔티브

로서 네트워크와 정보 교환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활동들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란 다음의 아동·청소년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도시이다. : 살고있는 도시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 도시에 대해 그들이 원하는 의견을 표명할 권리, 가족·지역사회 및 사회생활에 참여할 권리, 건강관리 및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누릴 권리, 안전한 물을 마시고 적절한 공중위생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착취·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거리를 안전하게 거닐 권리, 친구를 만나고 놀 권리, 동·식물을 위한 녹색공간을 가질 권리,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 권리, 문화 및 사회 행사에 참여할 권리, 민족·종교·소득·성·장애로 인한 차별없이 모든 서비스를 누릴 권리 등. 즉, 아동·청소년친화도시는 자기 효능감, 교육, 여가, 문화적 조화에 대한 경험, 도시환경에 대한 연계감과 같이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하는 데 관련된 모든 면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친화도시는 회복력 있고(resilient) 안전하고(secure) 역량이 있으며(capable) 살만한(livable) 도시로서, 아동·청소년이 스트레스와 억압, 역경을 유연하게 이겨내고 쉽게 회복할 수 있으며 위협이 없는 안전한 도시,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되고 촉진되며 물, 교통, 음식 안전과 공간, 환경 친화적 기술, 혁신 등의 요소가 보장되는 도시를 말한다.

1) CFC는 아동·청소년이 살기좋은 도시가 모든 사람들에게도 살기 좋은 도시임을 강조한다(A city friendly to children is friendly to all). CFC 관련 세부정보는 www.childfriendlycities.org 참고

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개발을 위한 아홉 가지 기본 원칙

유니세프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무국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틀을 개발하여 지역정부 절차 속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9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원칙들은 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모든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관점과 기본적인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구조와 활동들이다. 기본 원칙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각 단계별 활동의 개발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원칙 1. 아동·청소년의 참여

아동·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촉진하며 아동·청소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고려한다.

이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다. 아동·청소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참여시키며 그들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한다. 아동·청소년을 협력자로, 고유한 인간으로, 권리를 가진 자로, 동등하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인식한다.

| 체크리스트 |

- 협약 제 12조의 원칙이 도시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반영되어 있는가?
- 아동·청소년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사람들, 특히 부모들에게 권장되어 있는가?
- 아동·청소년 견해의 존중 정신이 아동·청소년과 더불어 혹은 아동·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초기 및 재훈련과정 내용에 스며들어 있는가?
-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신중하고 차별 없이 구하고 있는가?
- 전문가들이 다루는 이슈들에 대해 전문가 그룹에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견해와 참여를 구하는가?(보호 이

슈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청소년 사법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문제 청소년)

- 유아들과 영아들의 견해를 고려하고자 하는 조치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 아동·청소년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및 사법 절차에 견해를 밝힐 권리를 갖고 있는가?

원칙 2.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법적 틀

모든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일관되게 증진·보호하는 법률과 규정 및 절차를 확보한다.

지역 당국은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형태의 법적 틀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뿌리를 둔 명확하고 원칙적인 법적 틀이 없으면 아동·청소년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과 실행은 개발되기 어렵다. 또한 강력한 법적 틀이라 하더라도 인식제고, 훈련, 필요시 강제 등을 통해 적절히 실행되어야 한다. 법률이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독립된 전문기관의 참여 및 조사,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진정한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하다.

| 체크리스트 |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이 아동권리협약을 존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국가적 검토가 있었는가?
- 국가의 법률이 아동·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철저한 지역 수준에서의 검토가 있었는가?
- 지역 당국은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법률이 아동권리협약을 존중하는 지를 검토했는가?
- 이 검토들에는 독립적인 요소가 포함되었으며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하며 자문을 제공했는가?
- 특히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일반 원칙들이 도시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아동·청소년은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한다.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생명권과 최대한의 생존 및 발달의 권리

-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및 사법 절차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아동·청소년들의 견해에 대한 존중

□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일정한 자문, 변호 및 소송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한 전도 시적 검토가 있었는가?

□ 아동권리협약의 완전한 실현을 증진하는 국가적 아동·청소년권리전략이 있는가?

□ 국가가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있는가?

□ 지역 당국이 아동·청소년친화도시의 건설을 주안점에 둔 아동·청소년권리전략을 개발하고 있는가?

□ 이 전략을 개발함에 있어 그 준비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NGO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더불어 혹은 아동·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관여시키는 포괄적 자문이 있었는가?

□ 이 전략이 협약 전체에 기초하여 아동·청소년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뿐 아니라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도 다루고 있는가?

□ 이 전략이 도시 내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가?

□ 지역 당국은 이 전략이나 전략의 개발과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가 - 예를 들어, 시장과 지방의회에 의해 채택되고 증진되고 있는가?

□ 이 전략이 기타 국가 아동·청소년권리전략 혹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가계획과 같은 다른 지역 및 국가 계획 메커니즘과 조화를 이루어 이 전략만 따로 소외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가?

□ 이 전략은 도시 아동·청소년들의 생활 전반에 관련된 구체적 우선순위와 한시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가?

□ 전략을 실행을 위한 분권화된 과정을 계획하고 있는가?

□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과 전략 자체가 모든 수준의 지역 거버넌스 시스템,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가족, 지역사회, 아동·청소년과 더불어, 혹은 아동·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전체에 잘 분배되어 있는가?

□ 전략이 효과적으로 검토되고 있는가?

원칙 3. 도시의 아동·청소년권리 전략

: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개발을 위해 상세하고 포괄적인 전략이나 아젠다를 개발한다.

국가들은 1990년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the World Summit for Children)와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for Children)에 의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도록 권장받아 왔으며, 국가행동계획은 아동권리협약에 기반을 두도록 장려되었다.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국가들이 아동권리협약 전체를 포용하는 통일된 전략이나 아젠다를 개발하도록 강하게 권장한다. 지역의 아동·청소년권리전략은 이러한 국가적 과정에 합리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적 전략이나 행동계획은 아동권리협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시 수준의 과정과 국가적 계획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동특별총회 결과 자료인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은 국가 정부들이 지역 정부 및 당국과의 협력관계를 개발하여 아동·청소년이 개발 아젠다의 중심이 되도록 돕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 체크리스트 1

원칙 4. 아동·청소년 권리 부서 혹은 조정 메커니즘

: 지역 정부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견해를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일을 책임질 영구적인 구조를 마련한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 정부의 중심에서 가시적인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영향력이 큰 총괄 부서나 조정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 부서 혹은 조정 메커니즘은 효과적인 조정, 모니터링 및 평가를 확보하며 아동·청소년 전략의 실행을 추구하기 위해 최고의 정치적 수준에서 - 시장실과 직접 연계 등 - 권위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이 부서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관점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 권리의 우선권을 정부 내 여러 부서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 체크리스트 |

- 다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도시 정부 내 부서나 조정 메커니즘이 있는가?
 -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촉진
 -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조정 담당
 - 아동·청소년전략 초안 작성 및 후속 조치
- 이 부서나 조정 메커니즘에 지역 정부 시장의 권위를 부여해 주었는가?
- 이 부서나 조정 메커니즘은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하며 아동·청소년의 견해가 그 사업과 도시 내 모든 정부 사업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가?

원칙 5.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평가

: 법, 정책, 업무 수행이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을 실행 전·중간·후에 평가할 체계적 과정을 마련한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최선의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갖도록 요청 받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영향력 조사(child impact assessment)라는 개념을 통해 법률과 정책이 실행되기 전 그 잠재적 영향에 대해 조사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일단 정책이나 법이 집행되고 나면 이것이 아동·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실

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향력 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동·청소년들이야말로 법이나 정책이 자신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영향력 조사 과정에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체크리스트 |

- 도시에 사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법, 정책 혹은 업무 수행에 대한 제안들이 제반 아동·청소년, 특정 그룹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는 과정이 있는가?
-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향력 조사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할 만큼 초기에 실행되는가?
- 도시 정부의 여러 양상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있는가?
- 이런 조사 및 평가 과정들이 불우한 환경에 있는 그룹이나 소외된 그룹을 포함해 모든 아동·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가?
- 이 과정들이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 이에 더불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독립적 과정이 있는가?

원칙 6. 아동·청소년 예산

: 아동·청소년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분석하도록 한다.

예산은 도시가 취하는 행동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 특정한 방법이며 예산 분석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의 중요한 형태이다. 아동권리협약은 국가가 최대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산 지출이 아동·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수 있는 틀을 포함한 상세하고 정확한 예산 분석이 없이는 어떤 국가나 도시도 협약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

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위한 다른 원칙들과 마찬가지로 이 원칙의 중요한 목적은 아동·청소년이 가시화 되도록 하는 것이다.

| 체크리스트 |

- 도시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자원의 공평한 몫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 도시 예산 전체와 예산 내 요소들이 아동·청소년에게 얼마나 쓰였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적절히 분석되고 있는가?
- 도시 예산 과정이 투명하며 아동·청소년을 자문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는가?
- 도시 정부의 모든 양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확보된 자원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예산이 준비되고 배분되고 있는가?

원칙 7. 도시 아동·청소년 정기 실태보고서

: 아동·청소년 권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데이터를 수집한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들은 도시 내 아동·청소년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게 될 것이다. 출생에서부터 18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통계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중심 정책 개발에 필수적이다. 남자청소년이나 여자청소년, 혹은 소수 인종 그룹, 장애 아동 및 기타 그룹에 대한 차별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계 및 정보가 일정하게 세분화되도록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은 평가, 욕구 조사, 해결책 제안 및 보고서 준비 등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수집된 통계와 정보는 분석을 거쳐 작성되고 이후 보고서가 출판, 배포되어 청소년친화도시를 위한 토대로 사용될 것이다.

| 체크리스트 |

-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건설의 진척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도시 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통계와 기타 정보

가 충분히 수집되는가?

- 도시 아동·청소년들의 실태 보고서가 있는가?
- 있다면
 - 이 보고서는 출생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가?
 - 특정 아동·청소년 그룹에 대한 차별을 조사하기 위해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이 보고서가 주요 정책 입안자들,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출판·배포되는가?
 - 수집이 가능한 통계와 정보의 공백을 밝히고 있는가?
 - 정책 개발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원칙 8. 아동·청소년의 권리 알리기

: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은 널리 알려져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국가들에게 협약의 원칙 및 내용들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성인 및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 29조는 교육의 목표를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데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학교의 교과과정에 인권과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해야 하며, 교육내용 뿐 아니라 학풍이나 학교 조직이 아동권리협약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과 더불어 일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이해 및 존중심을 제고하기 위해 초기 및 재훈련 과정이 조직되어야 한다.

| 체크리스트 |

- 도시는 아동·청소년과 성인 사이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지식 및 존중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였는가?
- 도시 지도자, 정치인 및 주요 관료들이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는가?
- 인권과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이 모든 수준의 학

교 교과과정에 포함되었는가?

- 아동·청소년과 더불어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초기 및 재훈련과정에 아동 인권의 존중심 함양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가?
- 아동·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원칙 9. 아동·청소년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들을 지지하고, 아동·청소년옴부즈퍼슨 또는 아동·청소년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들을 개발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채택 이래 아동·청소년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증진하며 보호하는데 전념하는 많은 비정부기구들이 설립되어 왔다. 성인들은 이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되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비정부기구들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건설의 한 협력자로서 도시 정부와의 공식적이며 영향력 있는 관계에서 점점 더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유엔은 국가 차원에서 인권을 모니터링하고 증진 및 보호하는 인권기구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아동·청소년 옴부즈맨 혹은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를 두거나 국가 인권기구 내에 아동·청소년 전담 부서를 두고 있다. 소수지만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권기구가 지방 혹은 도시 수준에서 존재한다.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 기구들을 실질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기구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열쇠는 이 기구들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강력한 감시자나 옹호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독립성을 갖는 것이다.

1 체크리스트 1

- 도시 정부가 폭넓으면서 적절한 범위의 비정부기구들과 협력관계를 개발했는가?
- 비정부기구들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통제적 지원과 참여 통로를 부여 받았는가?

- 아동 및 청소년 주도의 비정부기구들이 권장·지원 받고 있는가?
- 도시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를 설립했거나 설립을 위한 로비활동을 했는가?

3. 나오는 말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은 전세계 여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경우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터키, 독일,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체코, 아일랜드 등이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유럽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회원국 활동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CFC 아홉 가지 원칙과 체크리스트는 지역단위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필요한 국제적 기준으로서 전세계 다양한 지역의 경험과 검증작업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한국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구축사업 추진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우리사회에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역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부천시, 군산시, 광주광역시에서는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오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아동권리조례 제정은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조약의 이념을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성장하는 구체적인 장인 지역에서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서울꿈나무프로젝트’,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부산만들기 마스터플랜’ 등도 지역수준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주목할 만하다.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전세계 도시들과 CFC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앞선 지역 사례들의 시사점을 공유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

청소년의 인권? Right Here!



대구 함지고등학교 | 차현정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현재, 과거와 비교해 청소년 인권의식이 제고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며 자발적인 청소년들의 직접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칙이란 범주 내에서 제한된 학생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어서, 청소년들의 삶에 필요한 역량을 적절하게 개발하거나, 개개인의 개성을 발전·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주도적인 의사표현이나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기란 실제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은 자기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작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권에 반(反)하는 사안들조차 무관심 혹은 외면하는 것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보다 나은 진로를 위해 교칙을 준수하고, 열심

히 공부만 할 뿐이다.

이번 취재는 청소년 인권 중에서도 의사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자기결정권과 이로써 느끼는 행복에 대해 알아보고자 본 기자의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해 있는 ‘(사)청소년교육 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이영은 선생님과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인권의 현주소와 추구하는 바를 듣기로 했다.

‘반딧불이’의 유래

대구지역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 위주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공부방으로 시작하였다가, 구청 도움으로 ‘느티나무 배움터’ 3개소를 4~6년간 운영하였는데, 이후 대구시에 사는 모든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고자 조직을 확대하면서 단체 명칭을 공모하였고 그 때 고등학생이 제안한 ‘반딧불이’를 선정하여 공동체의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했다. 엉덩이에서 불빛을 내는 반딧불이같이 청

소년들을 위해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반딧불이’ 활동 본 공동체에서는 각 학교 신문부 동아리를 운영지원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방과후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학교내 동아리 사업이 확연하게 줄었다고 했다. 그 밖에 학교 밖 체험 사업으로 농촌체험학습이나 전통문화체험학습, 대구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문화체험학습, 청소년인권 캠페인 및 인권캠프 등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을 기획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반딧불이는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지향하는 단체이다. 고등학교 때 반딧불이 공동체에 참여한 후, 대학생 도움꾼이 된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고등학교 때는 단지 학교내 활동보다 재밌고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활동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학교와 달리 나의 생각을 자주 물어 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아주 늦게라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열어주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탐구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게 해 준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요.”

청소년 인권의 현주소

반딧불이를 10년간 운영해오면서 잘된 경우보다는 부정적이었던 경우가 더 많았다고 했다.

그 일례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한 학생이 어머니에게 걱정을 듣고, 교장선생님께 불려가 일주일간 벌 청소를 한 경우라든지, 학생회장이었던 참여 학생이 어이없는 이유로 선생님께 뺨을 맞게 되어 체벌 이유를 밝히려려고 시도했지만 해결은 커녕 더 난처한 경우에 처하게 되었던 경우라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참여가능한 교외활동 횟수는 확연히 줄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YMCA, YWCA 등 교외 연합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여러 학교가 모여 체험 학습을 떠난다거나 그 외 학교 내외의 소규모 인문사회 계열 동아리는 당대의 사회적 이슈나 문학과 사상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을 가지기도 했었다고 했다.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교외행사는 차지고고서 교내 동아리나 계발 활동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상태이다. 혹은 실시되더라도 학생부상에 활동증거로써 남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설령 학생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동아리를 학교내에 창설하여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싶어도 요구되는 조건과 사안이 너무 많아 실현이 어렵다고 한다. 즉, 청소년들이 교과목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 계발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을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것이다. 학생인권침해신고센터 청소리의 ‘인권침해 신고(3월 이후 약 43건), 2009년 4월 15일, 청소년 생생 리포트 바 이러스’ 에서 보면, 전국을 구분하지 않고, 6-7개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학교가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 침해 사례로는 경기도 수원○○고등학교의 경우 복도에서 손이나 발로 학생들을 체벌하고, 경기도 성남○○고등학교는 열차려, 오리걸음으로 운동장을 2바퀴 돌리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발로 머리를 차는 등 주로 신체폭력이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

청소년의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나라간, 개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Ⅲ-청소년 인권실태의 국제비교」(연구보고 08-R09, pp28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다른 나라의 청소년과 비교하였는데 ‘사회에 반드시 참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90.1%로 스웨덴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이 82.6%, 그 다음 한국이 80.2%로 3위를 기록했다. 참여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의 인식이 낮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에 참여해도 무의미하다’는 항목에서 한국은 13.9%를 기록해 다른 나라에 비해 참여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참여에 대한 무력감과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을 또한 엿볼 수 있었다.

성숙한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참여가 필요하고, 청소년은 가치 정립을 할 수 있는 따로적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정치나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는 일반적 어른의 시각은 **잘한다, 기특하다**가 아니라 **공부나 하지, 왜 저런 걸 하고 다녀?, 학생 주제**에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했다.

그 일례로, 이회창 국무총리 시절에 중요한 청소년 사회참여 국책사업으로 ‘옴부즈틴’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 때 ‘반딧불이’가 대구, 경북지역 옴부즈틴 센터를 하였는데 당시 50명을 선정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하였다고 했다. 원래 ‘옴부즈만’ 제도

라고 하여 신문에 잘못된 기사가 있을 때 개인 스스로 의견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를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전국적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것이다. 옴부즈틴에 선정된 학생들은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서 선정적인 방제를 유해민원으로 제기하고, 학교 내 여러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지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었지만, 역시나 학교의 부정적 시각과 인식으로 선생님께 불려가 혼이 나고 조사를 받는 등, 결국 옴부즈틴 제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것이 국책사업이었는데도 말이다.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청소년 시국선언을 주도하였던 한 학생이 반딧불이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그 학생은 지방에서 홀로 활동하며 개인적으로 집회에도 참가했다. 그러나 학교명예를 침해·실추시키고 학교장 허가 없이 교외활동에 참가했기 때문에 학칙위배라 하여 결국 징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 징계의 기준이 되는 학칙을 보여 달라고 했지만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영은 선생님은 이와 같이 상위기관의 관점이나 사안에 따라 명확한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학칙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 볼 수 없는 학칙으로 징계를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했다.

학교장의 허가 없이 참여한 교외활동이 광우병과동과 같이 정치나 시국관련 집회였기 때문에 징계해야만 한다면 이것은 다른 사안으로도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 제재를 위한 수단으로써 확대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될 것으로 우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일일이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던 중 교수연회를 비롯해 각종 청소년캠프, 여러 인문·사회·예술적 행사 및 본인과 같은 기자활동을 포함하여 교외활동에 참가한 경우, 얼마든지 학칙위배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확대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학교 교칙을 학교와 더불어 학부모, 학생이 함께 학생의 표현의 자유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제정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그리고 교육은 인권이 주는 과거 투쟁 일변도의 상징적 이미지로 불편해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행복한 자아와 건전한 성장으로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의 확대요, 태생적 기본 권리의 회복으로 인식 전환을 하고 청소년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자기 결정권

대구지역 고등학교는 거의 모두 경쟁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긴다.

야간자율학습의 폐지 혹은 자율적 야간자율학습을 원하는 것은 비단 대다수 학생들만의 요구일 뿐인가? 이를 늦게까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지지하시는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은 것인가? 이영은 선생님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다.

그중 하나는 변화에 대한 긍정적 사례로써 선배 기자가 후배 기자를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기합을 행사하는 것이 다반사였던 70~80년대와 달리, 후배 기자들이 끊임없이 저항하고 부당함을 알려,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과거의 적절치 못한 관행이 지금은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Courage is resistance to fear, mastery of fear, not absence of fear."

- Mark Twain(마크 트웨인)[美작가, 1835-1910]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며 극복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변화하지 않는 상위 교육행정과 자기 의사 결정에 따른 책임있는 자세가 부족했던 대다수의 학생들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반대의 일례이다.

대구 ○○고등학교의 ○○선생님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에 한해 신청을 받으셨는데 막상 이를 실시하자 학생들은 지각을 일삼았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는 한반에 2~3명만 남거나 아예 불참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결국 교장선생님께 불려가게 되었고 이 결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보호해주고 지지했던 소수의 선생님조차도, 야간자율학습을 하거나 하지 않는 반의 성적을 비교·평가하거나, 진학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거센 반발과 자율적 의사결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학생들의 태도에 당면하게 되면 학생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계속 보장해 주기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다.

Liberty without learning is always in peril and learning without liberty is always in vain." -

John F. Kennedy(존 F. 케네디)[미국 대통령, 1917-1963]

(**"배움에 없는 자유는 언제나 위험하며 자유가 없는 배움은 언제나 헛된 일이다."**)



현재까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의 강제적 실시’에 대해 본 기사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내 한 학급 34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보충학습기간(2009년 8월 6일)중에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찬성 7명(21%), 반대 22명(65%) 그리고 기타 5명(15%)로 반대 의견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된 반대 의견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학습 효율성까지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야간자율학습 시간에는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 그런 학생들을 감독하기 위해 교사들은 야간근무를 하기까지에 이른다. 떠드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눈을 피해 소란을 피우거나 공부를 하는 척하고 교사들은 공부를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학생을 처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이번 설문조사시 응답한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다수의 ‘성적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으로 반드시 성적향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이 과연 ‘자신 스스로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시간’의 의미를 가진 야간자율학습의 효율성 원리에 부합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언젠가 청소년들은 결국 어른이 될 것이고 비로소 자기 의지대로 다양성을 회복하는 것은 분명한 일일 것이다. 다만, 너무 멀리 돌고 돌아서 그때까지도 그 꿈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청소년의 행복

‘고기도 씹어본 흠이 고기 맛을 안다’라는 말이 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아야 하므로, 청소년들에게 가능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를 주면 표현의 자유에 따른 자신의 마음가짐을 스스로 터득하고 배울 수 있고, 기회가 없다면 아이들은 ‘공부’라는 한 통로로 그 수많은 다양성을 무시당하고 획일적인 공부로만 평가할 수 있도록 줄

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했다.

「한국의 교육문화와 아동·청소년의 행복」(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09. Vol.20. No.1, pp.365 ~ 392)에서 강제적인 학습은 대학 진학을 위한 시험을 치르는데 요긴한 요령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지식과 생각과 삶을 연관시키는 능력은 부족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학생들 스스로 인지능력 중 문제해결능력이 가장 뒤떨어진다고 응답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시절은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인생’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하게 현재를 누려야 할 삶, 자체인 것이라고 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한국의 교육문화는 개인적·사회적 역량 증진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학년 진급에 따라 학업부담이 높아지면서 행복감이 감소된다는 해석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중·고등학생 1·3학년 5,951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53.08점(100점 만점기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행복감 6개 영역 중 ‘자신에 대한 만족도’(29.1%)와 ‘학업 만족도’(11.2%)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은 아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일 것이다.

또한 가장 특기할만한 사항은 고등학생들 행복지수가 중학생보다 낮아(중학생 = 55.77, 고등학생 = 51.35), 학년 증가에 따라 행복감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현재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은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무시하고, 학업과 삶에서 단일한 성공 모델만을 추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을 도의시키고 있다. 청소년의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의사표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행사를 인정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관적 행복감은 물론 선택에 따른 책임까지도 포함하여 의미 있는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했다.

청소년을 위한 한마디

청소년 시기는 그냥 금방 거쳐 지나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 반드시 깨닫고 가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 그들 자신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경험없는 현재가 완성된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대신 선생님은 ‘right here (지금 여기에)’를 강조하신다고 했다. 청소년 시기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사회와 교육문화는 청소년을 바라볼 때 더 이상 규제와 통제의 보호론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 자체를 존재로서 여기는 주체론적 시각으로 봐줘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취재를 마치면서...소회

이번 취재 활동을 하면서, 학생인권과 청소년 인권은 그 범위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그리고 청소년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권이라는 단어에서 학생인권 침해 사례와 그로부터 비롯된 지난한 과정들이 먼저 상상되어 청소년이자 학생신분인 기자로써는 불편함과 심적 부담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학생은 청소년과 다른가? 아니다. 학생은 청소년이다. 그럼 청소년 인권은 학생인권과 다른 이름으로 불려져

야 하는가?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같음이다.

학생(學生)이란 공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단어임에 틀림없지만, 학생은 광의의 ‘청소년’으로 불려져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청소년은 숫자 면으로나 사회적 지위에서도 사회적 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청소년인권 문제를 자신들이 직접 해결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기란 매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한국사회는 선진문화 국가가 되기 위해, 청소년의 지위와 인권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청소년 인권을 가능한 것부터 회복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히 ‘반딧불이’와 같은 청소년단체들과 인권단체들, 일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및 교원단체, 소수의 뜻 깊은 기성세대와 미숙하나마, 스스로 깨우친 여러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실천적 시도의 증거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는 것은 “장차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오늘은 적어도 매우 희망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청소년 인권, Right Here! 다시금 반주(反芻)해 본다 



반딧불이 인터뷰 사진



온 세상에 스마일

-아시아공동체학교



해운대여자고등학교 | 이유진

인권의식변화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대한민국도 1948년에 탄생했으나 ‘세계인권선언’과 동갑이다. 하지만,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과 경제개발이라는 시급한 과제 때문에 ‘인권’이란 국민들에게는 사치품으로 취급되었고, 지도자들에게는 정권유지의 방해물로 생각되어졌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현재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규모가 아시아에서 4위가 될 정도로 성장했고, 지구가 세계화 되어가면서 우리 사회도 전 세계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국가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아동, 청소년, 이주노동자, 노인, 장애인)의 인권에 정책적, 경제적으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게 되었다. 당사자들도 자신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모임이나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국가에 지속적으로 권리를 요구하며 공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은 '장유유서'의 관습과 문화가 매우 뿌리 깊어 기성세대인 교사가 아랫사람인 학생에게 일방적이고 하향식으로 지식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래서 그 동안 이런 교육환경에서 청소년이 보편적 인권을 누리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비록 소수이지만 뜻있는 학생들의 활발한 인권 활동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청소년 인권 단체(로이-Right of youth,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만들어 두발자유, 야간자율학습폐지, 교내종교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등 단순히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육마저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도 있다. 바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1백만 명인 시대가 되었고, 한국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그들의 교육환경은 8.15해방 직후 미

군정시대의 혼혈아들의 교육환경과 별 차이가 없다. 피부색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차별, 언어 습득의 지체로 인한 학습부진, 또래 집단과의 여러 가지 이질감 등으로 많은 청소년이 학업을 포기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권을 위해 2006년 개교한 ‘아시아 공동체 학교’를 방문해 취재해 보았다.

아시아 공동체 학교의 교육 목표

- 첫째, 인간 · 사회 · 자연을 상호 보완적인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 둘째, 인종적, 민족적 편견과 차별에서 해방되어 천부인권을 누릴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 셋째,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창조적으로 승화시켜 민주적이고 창조적인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 넷째, 자신과 사회와 역사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균형 잡힌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아시아 공동체 학교 둘러보기

피부색이 조금 다르고 한국말이 서툴러서 어디 한곳 마음을 터놓을 수 없었던 아이들 입장에서 그 동안 꼭꼭 숨겨 놓았던 마음의 상처를 꺼내 놓을 수 있는 보금자리이고,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편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다. 모두 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았고,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듯 했다.

또한, 다른 일반대안학교들이 주로 ‘열린 교육’만을 지향한다면 이 학교는 열린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세계인을 만드는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이 강조되고 있었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 하나 정도는 원어민에 가깝게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었다.

2006년 학생 수 11명에서 시작하여 2007년 22명, 2008

년 34명, 2009년 47명으로 3년 만에 학생수가 4배 이상 늘었지만, 한 후원자의 도움으로 그 동안 무료로 사용해 왔던 학교 건물이 재건축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옮겨야만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연친화적이고 자유로운 교육을 펼치는 대안학교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지만 ‘아시아 공동체 학교’의 입학 조건은 1순위가 다문화가족 자녀, 2순위가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 3순위가 이주노동자 자녀이다. 하지만 일반 한국인 자녀도 입학할 수 있다.

입학정원은 초등학교 1학년~6학년까지 한 학년 당 10명(다문화가족의 자녀가 7명, 일반자녀 3명)이다. 정규반에서 수업을 받기 전 디딤돌 반에서 한국어를 배운다. 학생들의 국적은 한국은 물론 러시아와 네팔, 중국 등 다양하다.

교실 안의 수업도 지향하지만 한국, 러시아 청소년 교류 후원의 밤, 낙동강 도보여행,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청소년 문화 교류 등 교실 밖 수업도 많이 하고 있었다. 얼마 전에는 펠릭 재단 공모전에서 ‘최명’ ‘류다’ 두 학생이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방법으로 올해부터는 다문화 사회연구소를 개소하여 다문화가족과 그 2세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또, 부산시와 부산시 의사회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병, 의원을 찾아다니며 홈페이지 게시판을 영어, 일어, 중국어로 관리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2학년학생이 한국어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다.

인터뷰 내용(오세련 선생님과 인터뷰-2학년 담임)

아시아 공동체 학교를 설립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을 타고 현재 우리사회는 이주외국인 200 만시대라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2050년경 이주외국인과 그 자녀들은 우리 인구 중 20%를 상회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약 167만 명으로 어린이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공교육기관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으며 잘 적응하고 있지만 일부의 아이들은 가난과 생김새 피부색의 차이와 미숙한 언어구사력 때문에 학교생활과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주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우리사회로의 갑작스러운 이주로 인하여 교육의 기본 도구인 언어능력이 전무한 상태이기에 이들은 한국의 정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로부터 배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보다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가진 장점을 제대로 살려내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은 어떠한지요?

아시아공동체학교는 한국교육과정과 국적별 교육과정 이 두 과정이 있습니다.

한국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의 주지교과 수업과 예체능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주아동과 이주민의 국적별 교육과정에서는 국적별 언어수업과 교과과정의 기본 수업을 가르칩니다.

다양한 교육형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요?

아이들은 그들의 출신국가 상관없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과수업이 가능한 정도의 교육을 받고 난 후 자신에게 맞

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의 아이들은 각 국가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부족한 일반교과과정의 경우 자습 또는 보충수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언어에 대한 집중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외국어 사용능력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주민 자녀와 이주아동의 경우는 출신국별 수업을 원하면 해당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과과정을 원하면 한국 교과 수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준이 생활하기에 불편 없을 수준이면 다른 언어 수업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시아 공동체학교에서 풀어나가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학력인정이 가장 필요합니다. 과거의 교육 목표가 학문의 세분화 경향에 부응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양성에 있었다면 미래의 교육목표는 전공심화 뿐 아니라 전공융합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거시적 안목을 갖춘 통합적인 인간의 양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 서로 이해하는 속에서 세상을 거시적으로 통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당연한 미래교육에 대한 한 방안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에 따른 교육적 실험과 도전이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많은 교육수요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아시아 공동체학교의 인가와 학력인정이 필요합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2학년 담임 오세련 선생님

문제점과 우리가 해야 할 일

재정적 문제;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재정문제였다. 김 무성의원(국회의원)과 여러 사회 인사들이 방문했지만 정부의 정기적인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어 일반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

열악한 환경; 교사와 학생들, 자원봉사자들의 의욕은 높았지만 다른 공교육학교처럼 재정지원이 안되어서 교육환경이 열악했다.

초등교육 학력 인정과 중, 고등학교 설립 ; 학력 인정이 되지 않아 시험을 통해 인정을 받거나 6학년 2학기에 학력인정학교로 전학을 가야 한다. 교육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중, 고등학교가 없어 상급학교 설립이 시급하다.

아시아 공동체 학교에 대한 홍보 부족 ; 한국정서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정을 중요시한다. 그것도 아주 작고 순박한 정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학교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조그마한 빈 공간을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이민자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은 사례가 생겼다. 필리핀에서 태어나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에 정착한 지 17년 된 한국인인 헤르난데스 주디스 알레그레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창조 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7번에 공천됐다.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그녀의 목표는 제1호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목표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면서도 보수적인 미국인들도 50년 전에는 ‘오바마’ 와 같은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도 미국처럼 50년 후에 다문화 가정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아시아 공동체 학교는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깊게 뿌리박힌 우리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교육권을 가지지 못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학교이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편견 때문에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교장 선생님과 교사,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했다. 세계가 하나가 되어 감에 따라 우리도 이젠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수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다문화사회를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 미래의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인권을 찾아주는 것이며, 미래의 대한민국의 국민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문화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자신도 한국인의 피가 섞였다는 자긍심을 길러 주는 아시아 공동체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해야 하고 우리들도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이 시대에 있어 보장되고, 지켜주어야 할 권리



영광 해룡고등학교 | 김희망

이 세상엔 수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먹고 자는 권리부터 국가의 원수를 선출하는 권리까지 다양하죠. 즉 살아가기 위한, 생활의 모든 과정은 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담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선 먼저 권리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권리(right)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권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천부적 인권입니다. 인권이 없다면 그 어떤 권리도 성립 할 수 없습니다. 원초적 권리인 먹고 자는 권리도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권리가 바로 인권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보장되어야 하고 지켜줘야 할 권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고 아직 미성숙하더라도 엄연한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인권이 보장되고 또 스스로가 지켜주고 있을까요?

먼저, 1989년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의 인권의식이 성장하면서 인권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쟁적 입시준비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하여 오히려 교육이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유보해야할 이유

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체벌, 과도한 두발제한, 학교생활규정의 내용 및 제·개정절차와 징계절차의 문제, 학생들의 사회참여와 의견표명권 제한 등 학교 내 인권문제는 수년간 사회 이슈화되어 왔으나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풍토로 인하여 현재 교육육기관인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에 따르면 교육은 아동청소년에게 삶의 기술을 제공하고 모든 범위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아동의 능력을 강화시키며, 적절한 인권가치에 의해 고무된 문화를 진흥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인권은 교육을 명분으로 하여 유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 인권가치에 대해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았을 때, 대표적으로 2004년 대두되었던 학교 내 종교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강의석학생은 학교 내 종교자유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칼럼] 강의석 종교자유 투쟁 후 5년..... "의무적 예배" 바뀌지 않아

일주일에 2번,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종교시간. 종이 치

면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자리에 앉고, 매주 2명의 학생들이 교탁으로 나와 예배를 진행한다. 아이들은 모두 입을 맞춰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송가를 부르며, 성경봉독을 한다. 그리고 교목선생님은 맨 뒤에서 이를 모두 지켜보고 있다. 44명의 아이들 중 기독교가 아닌 아이들만 해도 절반이 넘는다.

이 아이들은 주기도문도 똑바로 외우지 못하고, 찬송가도 모르기에 따라 부르지 않는다. 성경봉독 또한 낯설기만 하다. 어느 순간부터가 난잡해진 예배시간이 끝나면 교목선생님이 못마땅한 얼굴로 교단에 올라선다. 그리고는 한 말씀 하시는데 "너희들 이런 식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거야!" (중략)

- 인터넷 뉴스 바이러스 심인우 기자

위 기사에서 보시듯 아직도 종교에 대한 자유는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주 두 번 종교시간에 자신의 종교에 불문하고 예배를 하여야하고 말도 안 되는 협박을 들어야 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걸 종교개혁이전의 사회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500여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상황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교자유는 헌법 제 20 조 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왜 청소년들은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청소년들에게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는데 말이죠. 종교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 내 두발규제가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들의 인권을 가장 많이 탄압하는 사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학생들과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발자유에 대해서 무조건적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개성도 중요하지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구태의연한가요? 하지만 전 청소년들은 아

직은 조금 미성숙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발에 대한 사례는 많습니다. 그중 최근에는 한 학생이 두발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두발단속에 걸려 자퇴서약서를 작성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두발규정을 어기면 자퇴하라는 '서약서'는 너무 합니다. - 성북구 경동고 앞에서 김민규 학생 1인 시위 벌여 성북구에 위치한 경동고등학교의 아침은 여느 아침과는 조금 달랐다.

아침7시 정문 앞에서 이 학교 1학년 김민준 학생이 일인시위를 벌인 것. 김민규 군은 이번 일인시위가 두 번째이다. 김민규 학생은 1인 시위를 한 이유로 ▲ 2학기에 바뀐 개정된 두발규정이 학생들의 의견수렴 하지 않았다는 점과 ▲두발규정을 어겼을 때, 벌점을 부과하고 이 벌점에 따라 <자퇴 서약서>를 쓰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는 것을 내세웠다.

(중략) 1학년 김 모 군은 "두발 규정이라는 것이 담당 선생님에 따라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고 토론했다. 이어 김 모 군은 "한 번 걸릴 때 마다 벌점을 받는데, 이게 20점 까지 쌓이면 부모님이 소환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중략)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김만중 기자

위 사례는 최근 성북구 경동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경동고의 경우 위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두발에 걸린 경우 서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김민규 학생의 1인 시위는 시작되었다고 한다. 김민규 학생의 말에 따르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학교 측의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실행되지 않았으며 그 규정에 맞추어 며칠 집중단속을 시행하였고 그 집중단속에 걸린 학생의 경우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서약서의 내용은 앞으로 교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였

을 시 학교를 떠나겠다는 자퇴 서약서였습니다. 이 서약서는 학생의 자의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며 학교의 강압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학교에서의 두발자유로 인권이 유린되며 2차적으로 학교의 강압적 자퇴서약서로 인하여 인권이 유린됩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두발규제는 몰라도 자퇴서약서를 강요한다는 건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집회결사의 자유(집시법)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거리에 촛불을 들고 나왔을 때부터 청소년들에게는 낯선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고 그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 들어서 청소년들은 많은 규제를 받았습니다. 헌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것을 보장하기 보다는 다른 법규와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규제를 해오고 있으며 이것도 엄연한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의 규제를 받았고 집회참가시 학교의 교칙에 따라 학생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S고등학교에서는 실제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K군의 학생회장 입후보를 저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K군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렇듯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청소년 인권유린은 학교에서 가장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권익과 인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움직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학생인권 조례 제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전국 청소년 학생 연합의 유

선경 학생을 만나보았습니다. 유선경학생을 처음 본 모습은 여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1. 먼저 전국 청소년 학생 연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전국청소년학생연합은, 지난해 5월 촛불집회를 계기로 결성되었습니다. 청소년들도 뭉쳐서 무언가 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현재는 청소년 단체로, 청소년들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활동을 하고있나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광주지부에서는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는 수도권에서 휴대전화조례에 관한 사업을 추진시키고 있고, 예전에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꽃들에게 희망을", 학생의 날 행사 등을 진행하며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3. 광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활동을 해오고 있나요?

현재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과 함께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4.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주시겠어요?

조례안 제정에 관한 활동의 시작은 우연히 회원들과 논의를 하던중 '광주광역시의 학생인권이 말이 아니다.' 란 얘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추진하다가 무산되어 2008년말부터 다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과, 인권상담모니터링센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 인권조례 내용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생각인가?

최근 광주에서 그린마일리지(최근 실시되고 있는 상벌 점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고, 앞으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관련 활동에서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의 이름으로 여러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6. 그렇다면 유선경학생이 생각하는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인권에 대한 생각을 말해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인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인권은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인권은 어디에 비교할 대상이 아닌 아주 당연한 권리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인권을 지키고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인권유린이 무조건 학교와 정부, 성인들에게만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스스로들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대도 비밀비재합니다. 그 예로는 학교폭력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폭력은 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약 39.4%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왜 학교폭력이 인권문제라 할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학교폭력 또한 인권유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당사

자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빼앗고 또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입니다. 요즘 갈수록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고생 알몸 폭행동영상 유출이 생겼고 그 동영상은 전 국민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알몸으로 한 학생의 강요로 서로의 뺨을 수차례 가격하고 면도칼로 좌상을 입히는 등의 잔인하고 끔찍한 폭력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맞짱동영상이라는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학교에 전학 온 학생과 원래 그 학교의 학생이 싸움을 하는 동영상으로 그 동영상은 싸우는 모습 또한 충격적이었지만 주변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야유와 환호성 그리고 사후처리에 대한 조언까지 들리면서 학생들이 폭력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이렇듯 누군가에 의한 청소년층의 인권유린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부적인 인권유린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또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교육정책을 바꾸기엔 시급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정책에 대한 변화보다는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급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들의 인권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 현실에 맞게 학생인권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 학생을 지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교칙을 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칙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칙을 구성한다면 보다 청소년 인권이 보



호받을 수 있을 꺼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학교만 노력한다고 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도 자신의 인권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닙니다. 또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의무도 충실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권리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강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렇듯 청소년들도 또한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 의무라는 것은 만약 학교와의 약속이 있다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인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쟁취하고 찾아나서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권리를 갖기 위한 자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또한 스스로의 자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조금 맘에 들지 않는다고, 나와는 다른 존재로 치부해 버리며 그를 따돌리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행하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상대의 권리도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권리를 지켜줄 때 나의 권리도 지켜진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은 이유는 하나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고 그들의 생각 또한 미성숙하여 어리광에 불과하다’ ‘나중에 돌아켜보면 지금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

다. 그리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들이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일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고통일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충실해라. 현재가 있기에 미래가 있다. 현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차후에 자신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도 찾으려 하지 않으려 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중요하다면 현재 맘을 열어주세요.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인권일수도 있다.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좀 더 행복해 질수 있다면 그건 열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인권유린의 원인은 바로 그곳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미래를 밝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발짝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미성숙하다는 생각보다는 동등한 입장으로 생각하며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기자후기>

지금까지 써온 기사에 비해 많은 양의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고3 수험생활을 해오면서 꿈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게 너무 좋았기에 육체적 고단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경험이 앞으로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치리란 생각됩니다.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과

청소년의 행복시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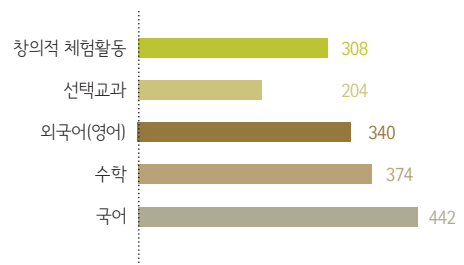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이라 불리는 초중고교의 교육내용은 국가 교육과정 체계 속에서 발전하여 왔다. 다시 말해 국가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배워야 하는 교육의 영역과 세부 교육요소들을 결정하여 교육시키는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체제를 의미한다. 이런 방식의 교육과정 체제는 국가나 사회적 요구, 혹은 사회통합을 반영하거나 국가 수준에서 많은 재원과 전문인력을 투자할 수 있어 교육과정의 질 관리에 유리하단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과정은 청소년들의 심미적 감상 능력이나 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신체적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잘 배려되었는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간의 교육과정 개편은 통상 정권 교체와 맞물려 왔다. 이는 새로 집권하는 정부의 통치철학과 국가비전을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지난 교육과정 개편 역사를 살펴보면 1991년 제5차 교육과정 개편까지 학력신장이라는 지상명제를 기치로 교육과정이 추진되어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공부 이외의 여유시간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약간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 1992년 제6차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교육과정의 분권화와 학력고사 철폐, 대학수학능력시험 신설을 통해서 미약하나마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997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 개편은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학습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다든지, 학교의 자율적 재량활동시간을 늘리는 등 청소년들의 여유 활동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담았다. 하지만 이때는 국가 교육과정이란 문서상 나와있는 교육과정의 재량권이 실질적으로 발휘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즉, 학

력신장과 진학경쟁이란 그간의 교육적 굴레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예측타당도적 관점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도입했던 수능시험이 또다른 표준화 학력고사화로 전락한 것이 그것이다.

이런 외중에 신정부 들어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고 지난 9월 30일 그 시안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즉, 그동안 교과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밥 신세였던 비교과 영역이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시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으로 제안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총 수업시간 수에서 이 ‘창의적 체험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도구교과로 매우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수학’ 교과의 시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학교 교육과정 수업시간 개편시안(단위: 시간)〉

청소년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학력신장이나 입시경쟁에만 매몰되는 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단지 청소년들에게 여유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이란 확산적 사고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신정부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과 단체 등의 인프라와 적절히 연계된다면 청소년들에게 확산적 사고라는 중요한 교육적 체험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그동안 국, 영, 수라는 도구과목에 집중했던 시간만큼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범 실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이명숙)은 10월 7일(수) 한국고충지원관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탁용역과제의 일환으로 전국 범죄피해자센터에 근무하는 30명의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및 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개발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형사조정제도의 배경과 의미, 형사조정 원칙과 역할, 조정기술, 조정의 절차와 단계, 조정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편집후기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도 어느 덧 18년이 흘렀습니다.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규정한 이 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신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2000년 두발자유화운동에서 최근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운동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사회와 비교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권수준은 미흡한 편입니다. 이번 호는 한국 청소년들의 인권의식과 수준을 되 짚어보는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아울러, 특별리포트로 진로, 봉사, 동아리 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이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될 예정이라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신나고 재미있게 배우세요

『창의적 체험활동』 초·중·고 정규 교과영역으로 편성

- 초·중학교는 주당 평균 3시간 이상 활동 참여
- 고등학교는 주당 평균 4시간 이상 활동 참여
-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

위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교육과정』 비문양기, 공청회 자료집(2009.09.30)에 수록된 내용임.